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캐나다편

배진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법제 연구 12-22-⑤-2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 편 -

배진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 편 -

Study on Legislation of the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Canada -

연구자 : 배진아 (서울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강사)
Bae, Jin-ah

2012.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 및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 주의 법을 통과시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 캐나다는 그 건국 과정부터 토착민과 영국인, 프랑스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였으며, 이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종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게 됨.
- 다문화주의 초창기의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영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캐나다 시민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이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 주들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게 됨.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세 단계

-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1971년 이전 단계로서 이 시기는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로서, 1971년 연방 정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시작함.
- 세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1980년대에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점차 제도화, 법제화 됨. 특히, 캐나다는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법제화 한 국가가 됨.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 1988년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은 이민자들이 인종이나 자신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캐나다의 주류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배우도록 함. 또한, 이 법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에 온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이외에도 ‘캐나다 인권법’,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등이 있음.

□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 본 연구를 통해서도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협회 및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간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침서들을 제시할 것임. 이 지침서들은 소수민들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의 온전한 참여를 위해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 가르치도록 하며, 다문화 교육 및 인종 차별주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족, 문화 그룹들 간의 평등에 대해 가르칠 것을 강조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이민 선진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여러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제어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반 인종 차별주의, 민족 문화적 평등, 다문화 교육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influx of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Korean society becomes gradually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
- The multicultural issue of Korean society has a great impact on the education. While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some legislations seem to be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multicultural education.
- Canada has a long histor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hat passed a multiculturalism act in 1988. Canada's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ism act have a great influence on every aspect of canadian society, including the field of education.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anada's multicultural policy as well as their multicultural education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plans for legisla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II. Main Contents

- The current state of Canada's multicultural reali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Canada was a multicultural society, consisting of three main ethnic groups, such as aboriginal peoples, the English and the French. Since then, its population became more and more diverse in terms of ethnicity and culture, with the increase of immigrants from many other countries.
 - In the early stage of multiculturalism, Canadian public schools focused on making immigrant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races Canadian citizens based on British values. They also concentrated on assimilating them to Canadian society.
 - However, this practice in education changed since the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from federal government. This led Canada's provincial governments to adopt and implemen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 Thre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Canada's multiculturalism policy.
 -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olicy is the era preceding 1971. This was a time of the acceptance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as a characteristic of Canadian society.
 - The second stage is between 1971 and 1981. With the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ism policy from federal government, the multicult-

turalism was formed, assisting ethnic minority groups to retain their identity and supporting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Canadian society.

- The third stage is from 1982 to present. In 1980s, multicultural policies were institutionalized and legislated. Especially, Canad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pass a national multicultural law,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in 1988.

Canada's multiculturalism and law

-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established in 1988, is the primary law related to Canada's multiculturalism. This law recognizes cultural values and ethnic identity of immigrants and assists immigrants to learn at least one of Canada's official languages in order to be harmony with the main society. It also aims to ensure equal and full participation of all Canadians in Canadian society, regardless of race and country of origin.
- In addition to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there are other laws supporting Canada's multiculturalism, such as 'Canadian Human Rights Act',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Canadian Heritage Languages Institute Act', etc.

Canadian multiculturalism law and education

- This study presents guideline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d by the association of teachers of second language educatio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se guidelines recommend to teach Canada's official languages for the full participation in Canadian society and protect minority languages. It also place emphasi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tiracism and equality among ethnic and cultural groups.

III. Expected Effects

- In examining multicultural policies and laws of Canada which has a long history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this study is expected to estimate some problems that Korean society may go through and to propose some directions.
- In examining multicultural education of Canada with many experiences in this area, this study can provide some useful informations about it and suggest some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 **Key Words** : Multicultural policy of Canada,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Antiracism, Equality among ethnic and cultural groups, Multicultural educa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2 장 용어 정의	15
제 3 장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과 다문화 교육	19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 및 다문화 현황	19
제 2 절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25
제 3 절 캐나다 공교육의 역사와 다문화 교육	26
제 4 절 캐나다의 시민권 교육	28
제 5 절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학교 교육	31
제 6 절 인종과 교육	35
제 7 절 다문화주의와 언어 교육 정책	40
제 4 장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45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	46
제 2 절 캐나다 주정부들의 다문화주의 정책	60
제 3 절 다문화주의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태도	63
제 5 장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67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67

제 2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	77
1.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	79
2. 연방 및 공공 기관들에 대한 지원	83
3. 통합의 증진: 보완적 계획들	83
제 3 절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85
1.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 Act)	86
2.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86
3. 캐나다 인권 법(Canadian Human Rights Act)	88
4.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Canadian Heritage Languages Institute Act)	90
5.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 법(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Act)	91
제 4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91
1. 캐나다 제2언어 교사 연합회의 다문화주의 교육 지침	92
2. 온타리오 주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 평등 교육	95
3. 온타리오 학교에서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	100
제 5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들	108
제 6 장 맺는 말	111
참 고 문 헌	113
【부 록】	121

제 1 장 서 론

국제적 인구 변동의 심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 한국 사회는 점차 인구 구성 및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다양화, 다원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회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나 캠페인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결혼 이주민들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이자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의 문제는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한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실 현장에서,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지닌 사회인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Banks¹⁾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자문화, 주류 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과 소수 인종,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1) Banks, J. A.(2010). Multicultural Education.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1971년 연방 정부에 의해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었고,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법제화 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정책적, 법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의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오랜 다문화 사회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킨 캐나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다문화주의 담론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의 정의에 이어서 제 1장을 통해서는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 캐나다 역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 2 장에서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다룰 것인데, 이 가운데 특히,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캐나다의 각 주정부들이 펼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캐나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들과 다문화주의 법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의 제 2 언어 교사 협회 및 온타리오 주의 교육부에서 발간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지침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 2 장 용어 정의

다음에 제시된 용어들은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교육에 관하여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이다.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²⁾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는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또는 조직에 공존하는 것을 기술하는 인구통계학적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기리는 이데올로기적 염원,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 또는 다양한 민족, 인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후원하는 과정 등을 가리킨다.³⁾

Rosado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내의 모든 다양한 그룹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들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그 조직이나 사회내에 있는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포용적 문화 속에서 이들이 지속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⁴⁾. 이에 대해, Hyman et al.⁵⁾은, Rosado의 정의의 앞부분은 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사람이 공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지적 한다.

2)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Hyman, Meinhard, Shields(2011)의 보고서 ‘The Role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Addressing Social Inclusion Processes in Canada’(Canadian Multicultural Education Foundation 발행)과 온타리오 주에서 1993년 발행한 ‘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 in School Boards: Guidelin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을 참고.

3) Dewing, T. M., & Leman, M.(2006).

4) Rosado, C.(1996).

5) Hyman, I., Mercado, R., Galabuzi, G. E., & Patychuk, D.(in press).

- **통합(Integration)**

통합이란 이민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갖게 되는 그들의 정착 경험과 사회 참여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이것은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 등과 같이 많은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 한다.⁶⁾ Frideres⁷⁾에 따르면, 통합은 주체가 되는 사회와 이민자들 간에 일어나는 양방향의 통합 과정을 의미한다.

-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

포용적 사회란 폭넓게 공유된 사회적 경험과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회로서, 이것은 개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의 기회의 평등과 삶의 기회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복지 수준의 성취에 의해 이루어진다.

- **배타적 사회(Exclusive society)**

Galabuzi⁸⁾에 따르면, 배타적 사회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들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접근을 의미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들을 양산하고 재생산 해낸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자원 및 참여와 권력의 기회들에 대한 차등적 접근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에, 그리고 사회 그룹들 간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결과들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가리킨다.

6) Kimlicka, W.(2010), p. 7.

7) Frideres, J.(2008).

8) Galabuzi, G. E.(2008).

- **인종차별주의(Racism)**

어떤 한 인종이 내재적으로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에서 나온 일련의 잘못된 가정과 의견, 행동들을 말한다. 인종차별주의는 개인들의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제도적 구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Antiracism Education)**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은 토착민들과 인종적 소수민 그룹들의 관점을 교육 시스템 및 이것의 교육적 실행에 통합시키는 교육적 접근이다.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의 목표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주의를 근절하는 것이다.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종 차별주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시키고, 이러한 차별을 식별하고 없애기 위해, 인종 차별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차 별(Discrimination)**

사람들을 인종, 국가, 언어, 신념, 성, 신체적 장애 및 성적 정체성 등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야기한다. 차별은 또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 이득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제한된 접근을 야기한다.

- **공 평(Equity)**

공평이란 접근과 결과의 평등을 가리킨다.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차별적 정책이나 관행들을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평등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이 가져온 영향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 **민족 문화 그룹(Ethnocultural group)**

민족 문화 그룹은 특정한 문화적 유산과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그리고 북미, 중미, 남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다양한 민족 문화 그룹들이 존재한다.

-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 그룹들의 경험과 공헌을 인정하면서, 행정 정책들 및 절차들, 교육 과정, 학습 활동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교육적 접근이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제 3 장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과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 혹은 문화적 모자이크 사회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다니는 캐나다는 오랜 다문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캐나다 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미국 사회의 특징과 비교되곤 하는데, 미국 사회가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 동화된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를 이루고 있다면,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와 차이가 있다.

오랜 다문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캐나다는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캐나다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 그룹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 왔다. 이것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문화 교육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기까지는 오랜 갈등과 소수민 학생들에 대한 차별의 과정이 있었다. 본 장을 통해서 우선,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과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공교육 도입 시기부터 다문화 교육이 실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 및 다문화 현황

캐나다 다문화 사회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이미 그 건국 과정부터 숙명적으로 다문화적 특징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 오늘날 캐나다로 알려진 곳에는 토착민들(aboriginal) 혹은 시초 국가 민족들(first nations peoples)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비록 이들은 캐나다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정치, 사회, 경제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행을 따르던 여러개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식민지화와 이주민 정착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 온 두 민족이 캐나다의 토착민들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었다. 초창기에 영국인들은 오늘날 대서양 지방과 온타리오 주에 해당하는 동부 연안을 따라 정착했던 반면, 프랑스인들은 오늘날 퀘벡과 노바스코시아로 알려진 지역에 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토착민과 영국인, 프랑스인은 캐나다 건국에 있어 주축이 된 세 개의 주요 민족들을 구성하게 되며, 이들은 이후에도 캐나다의 정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세 민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이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민족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로의 이민은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에 특히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당시의 이민자들 가운데에는 영국과 미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동부 유럽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많았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와 같이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철로 건설을 돕기 위해 오기도 했고, 노바스코시아와 온타리오 주에는 미국의 노예제도로부터 탈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민자들이 정착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이민에 관한 기록은 1860년 경 부터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약 6,276명의 새로운 이주민이 캐나다에 왔으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캐나다로 온 북유럽인들 이었다.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캐나다는 이민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캐나다가 인구 성장 및 서부 지역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추세는 제 1차 세계 대전과 193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경제, 사회적 이유들로 인해 이민을 제한하게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캐나다 정부는 다시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이후 20세기 동안 캐나다 이민자들의 숫자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⁹⁾

이와 같은 이민의 증가는 캐나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건국 당시 토착민과 프랑스인, 영국인의 세 민족이 주축이 되었던 인구 구성은 이후 이들 세 민족들 이외에 다른 많은 국가들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시대에는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각각 60%, 30%를 차지했으나, 20세기가 끝날 무렵 캐나다의 이러한 인구 구성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1981년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전체 비율은 각각 40%와 27%를 차지하게 되었고,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건국 당시의 주요 세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대신,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캐나다 인구 구성 비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중동, 중남부 아메리카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1년과 2006년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개 이상의 다른 민족 출신들로 구성된 국가임이 드러났다. 특히, 2006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 가운데 19.8%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캐나다 인구의 다양화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의 영향이 크다. 지금은 다민족 다문화론을 하나의 국가적 특징으로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를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펴고 있지만,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캐나다가 모든 이민자들에게 항상 관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 이민 역사의 초창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점차 미국 및 유럽계 백인들을 선호하는 이민 정책을 펴는 한

9) Joshee, R., & Johnson, L.(2007), p. 93.

편, 1885년 경 중국 이민자들에게는 인두세(head tax)¹⁰⁾를 부과하는 등 중국인들의 이민을 심하게 규제하는 차별적인 이민 정책을 펴게 되었다. 1910년에 도입된 한 이민 정책은 캐나다 정부가 차별적인 이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캐나다 내각에 캐나다의 풍토와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인종에 속하는 이민자들도 캐나다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1923년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선호하는 출신 국가의 이민자들과 선호하지 않는 출신 국가의 이민자들을 분류했으며, 이러한 차별적 정책들은 1962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2년 이민법¹¹⁾이 개정되면서, 서부 유럽인들을 선호하던 차별적인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되었다. 1978년에 통과되어 2002년까지 지속되었던 한 이민법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의 목표를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인구와 사회, 경제, 문화적 목표들에 도달하고, 가족의 재결합과 난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본적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¹²⁾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

10) 중국인들의 캐나다로의 이민은 1858년 경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금광 채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881년과 1885년 사이 캐나다의 태평양 철도가 건설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이 철로 건설을 돕기 위해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철로 사업이 끝나자마자,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중국인들의 캐나다로의 이민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에게 50\$의 인두세를 부과하였다. 인두세는 이후 1900년도에 100\$로 인상되었고, 1903년에는 500\$로 인상되었다. 당시 500\$의 가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 유입하였다. 캐나다 정부의 이와 같은 차별적 이민 정책은 196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1) 1962년 이전까지 캐나다는 차별적 이민 정책을 폈다. 즉,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온 백인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는 등 캐나다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캐나다 입국에 불리한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2년, 당시 시민권 및 이민 부의 장관이었던 Ellen Fairclough는 새로운 이민법의 도입으로 인종적 차별을 제거하였다. 새로운 이민법은 교육적 요건과 요구되는 다른 자질들을 갖춘 이민자들도 그들의 피부색이나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Derwing, T. M., & Munro, M. J.(2007).

해 캐나다는 더욱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성이 하나의 사회적 현실로 정착된,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신지에 따른 캐나다의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출신지에 따른 캐나다의 인구 구성(2006)

출신지	전체 응답자 수	인구 비율(%)
영 국	6,570,015	20.2
프랑스	4,941,210	15.3
스코틀랜드	4,719,850	14.4
아일랜드	4,354,155	13.5
독 일	3,179,425	9.8
이탈리아	1,445,335	4.3
중 국	1,346,510	4.0
북아메리카 인디언	1,253,615	4.0
우크라이나	1,209,085	3.7
네덜란드	1,035,965	3.1
폴란드	984,565	3.0
동 인디언	962,665	2.9
러시아	500,600	1.5
웨일스	440,965	1.3
필리핀	436,190	1.3

출처: Statistics Canada, 2008

*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종적 출신지에 대해 여러 개의 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응답을 거절할 수 있었음.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캐나다 인구는 이민의 역사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화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출신국의 다양화는 캐나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눈에 띄는 소수 민족들’(Visible Minorities)¹³⁾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 지역인 토론토, 밴쿠버와 같은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들이 새로운 문화적 관행과 사회적 이슈들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캐나다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표 2>는 2009년 통계 자료로서 캐나다 및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 지역인 토론토와 벤쿠버, 그리고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눈에 띄는 소수 민족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표 2> 캐나다 및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눈에 띄는 소수 민족들의 비율

지역	인구 비율
캐나다	16.2%
토론토	42.9%
벤쿠버	41.7%
몬트리올	16.5%

출처: Brooks, 2009(Makarenko, 2010 수록)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크게 독립 이민자와 가족 이민, 그리고 난민의 세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캐나다 입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민자는 독립 이민자의 범주에 속한

13) ‘Visible minorities’(눈에 띄는 소수 인종들)는 토착민을 제외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인구들을 지칭한다.

사람들로서 이들은 숙련된 노동자들, 기업가들, 그리고 주정부가 지명한 이민자들로¹⁴⁾ 구성된다. 가족 이민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들의 숫자도 상당한데, 이들은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가족들이나 교회, 민족 문화 단체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들은 매년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약 10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퀘백의 경우는 불어 사용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구성에 있어서 다른 주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른 주들과는 달리, 프랑스 출신 이민자들의 숫자가 퀘백 이민자들 가운데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¹⁵⁾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고 있고, 캐나다의 출생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제 2 절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2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서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차별적 이민정책을 폈던 캐나다가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캐나다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보다 다양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 있어 캐나다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과정에 있어서 교육 기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들은 캐나다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주 정부 기관들은 1971년

14)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들은 연방 정부와 이민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에 따라 주정부의 기준에 적합한, 전망이 밝은 이민자들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정부의 지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민자들은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주정부의 지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Derwing & Munro, 2007, p. 105).

15) Derwing, T. M., & Munro, M. J.(2007).

에 만들어진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내놓기 시작했다.¹⁶⁾ 다음을 통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학교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캐나다 공교육의 역사와 다문화 교육

오늘날과 같이 캐나다에 공교육이 정착하기 이전에 캐나다의 학교 교육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은 주로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私)기관들 또는 개인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적은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국가주의에 대한 움직임과 1867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탄생으로 인해 캐나다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됨과 동시에 점차 민주화된 사회로 변모해감에 따라 공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¹⁷⁾

1840년부터 18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캐나다의 여러 주 정부들은 교육을 중앙화시키는 법을 입법화했고, 그 때까지 부모들이나 지방 커뮤니티들에 맡겨졌던 학교 교육을 주 정부 당국의 통제권 하에 두고자 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여러 주들은 무상 의무 교육을 법적으로 실행하였다.

공공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애국심을 가진 훌륭한 시민과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해 내는 기관으로 여겨졌다. 또한, 이들은 교육을 통해 캐나다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톨릭적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국가 건설 초기부터 이러한 가치를 자연

16) James, C. E., & Wood, M.(2005).

17) James, C. E. & Wood, M.(2005).

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교육에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산업화와 함께 도시들이 성장하고 이민자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게 된 캐나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을 영국적 캐나다의 가치를 지닌 애국자들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초창기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에 논의되었던 문화적 차이점에 관한 문제는 캐나다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던 카톨릭 교인들과 프로테스탄 교인들 간의 종교적 차이, 그리고 영어권 캐나다인들과 프랑스어권 캐나다인들 간의 차이를 의미했던 반면, 토착민들 및 흑인 캐나다인들의 문제는 경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식민 종주국의 문화적 가치와 관행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¹⁸⁾

이와 같이 캐나다에 공교육이 자리 잡던 시기의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주류 사회로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영국계 캐나다의 국가주의 가치를 따라야만 했다. 캐나다가 추구했던 동화주의는 포용성(inclusiveness)과 사회적 평등성을 의미했지만, 이것은 결국 캐나다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정책에 불과했다.¹⁹⁾ 그러나, 이처럼 이민자들을 영국계 캐나다인들의 가치로 동화 시키려던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18) James, C. E. & Wood, M.(2005).

19) Axelrod, P.(1997).

제 4 절 캐나다의 시민권 교육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캐나다인들은 영국 시민들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캐나다의 국가 정책들도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시민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947년까지 캐나다인들은 영국 여권을 지니고 다녔으며, 법적으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국민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제 1차 세계 대전과 내전을 겪으면서 캐나다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 정체성을 갖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시민권 법(Citizenship Act)²⁰⁾이 통과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및 실행을 만드는 과정에서 캐나다는 주로 미국의 모델들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정책 입안자들 및 교육가들은 미국의 교육과정 및 교육적 접근법들을 도입하게 되었다(Joshee & Winton, 2007).²¹⁾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시민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애국심과 공통의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활동들을 지칭하였다. 이것은 또한 외국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도 포함되었다. 캐나다에 새로이 정착한 사람들을 위한 시민 교육은 영어 및 불어를 가르치는 언어 교육과 역사, 정부, 지리,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가르치는 시민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캐나다 출신 국민들을 위

20) 1947년 이전의 캐나다 귀화 법(Canada's Naturalization Acts)은 캐나다인이 된 이민자들에게 영국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1947년 효력을 발생하게 된 캐나다 시민권 법(Canadian Citizenship Act)은 캐나다의 국민들을 영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후 1976년에 도입된 시민권 법을 통해서, 캐나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캐나다 시민으로 지칭하게 되었으며, 1977년에 제정된 시민권 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시민들은 캐나다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21) Joshee, R. & Winton, S.(2007).

한 시민 교육 내용 가운데에는 새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포함되었다.

시민 교육에 있어서 캐나다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던 프로그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프로그램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전쟁 기간 중 공공 정보 사무소(Bureau of Public Information)를 주축으로 Canadians All이라고 불리는 라디오 방송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캐나다 사회의 문명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다양한 민족 그룹들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이었다. 또한, Peoples of Canada라는 제목의 영화 및 Canadians All이라는 팸플릿도 제작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캐나다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그렸으며, 캐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캐나다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²⁾ Joshee & Johnson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 법이 미국의 시민권 법에서 표방하는 바와 다른 점은,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민 교육에도 반영되어, 캐나다의 시민 교육은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적 특징을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한편,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영감을 미국으로부터 얻었지만,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만 지속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Joshee & Winton은 그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들고 있다.²³⁾

첫째, 캐나다는 그 건국의 역사부터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공존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연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은 그들의 본토와의 연계

22) Joshee, R. & Winton, S.(2007).

23) Joshee, R. & Winton, S.(2007).

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다. 또한, 1763년의 궁정 성명서는, 토착민들이 자치 정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초창기 캐나다의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캐나다의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던 국가인데다,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노예제도로부터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보다 관대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캐나다의 성인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들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관한 가장 혁신적 프로그램들을 발달시켜왔다고 인정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인 John Humphrey는 UN에 인권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또 다른 캐나다인 Lester B. Pearson은 UN에 평화 유지군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이와 같은 국제적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넷째, 1940년대부터 캐나다의 정부 기관은 몇몇 비정부 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과 교육에 있어서 미국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에 속한 공공 기관들 및 비정부 기관들을 통해 캐나다에 도입되었으며, 이 정책들은 이 두 기관들 모두로부터 지지받고 있었다.

다섯째, 캐나다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시민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전시에 시민권은 애국주의를 의미했지만, 전후의 캐나다는 새로워진 시민법(Citizenship Act)을 갖게 되었고,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의 강점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다양성은 곧 시민권과 연관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Paul Martin, Sr., Frank Foulds 및 V.J. Kaye와 같이 건국 초기에 영향력 있던 정책 입안자들 및 학자들, 교육자들이 문화적 다

양성의 가치를 고수하였다는 점은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는 다문화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1971년에 도입된 다문화주의 정책과 1988년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다음을 통해서는 특히, 이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5 절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학교 교육

1971년 캐나다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자, 캐나다의 주 정부들은 다양성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이해와 그들이 당면한 필요성에 따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다른 주들은 다문화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현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시하는 다문화주의 정책도 그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온타리오 주의 경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를 통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자녀 및 인종적 소수민 가정의 자녀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퀘백 주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사회로서의 퀘백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퀘백 주는 ‘상호 문화주의 정책’(policy of interculturalism)을 도입함으로써 화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퀘백 주의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정책과 닮았지만, 이것이 가진 한계점은

24) Fleras, A., & Elliott, J. A.(1992).

그들의 공통어인 프랑스어를 통한 상호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였다는 점이였다.

한편, 몇몇 주에서는 제 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태리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만다린, 광둥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다. 토론토의 경우, 처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나 토요일에 주로 실시했으나, 점차 이들을 정규 수업에 도입하게 되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태리어, 스페인어 및 그리스어를 문화적 요소들과 더불어 국제 언어(international languag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캐나다 토착민들의 문화 및 언어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토착민들은 캐나다 전역의 학교 위원회와 일하면서 민감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Joe Duquette High School과 같은 대안 학교를 세워 일반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문화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토착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문화 주간’(Multicultural days)이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다양한 민족 문화 커뮤니티들의 다문화적 유산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 및 인종적 배경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문화 주간 동안에는 소수민 그룹의 일원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고 여러 행사들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관행들 및 음식, 예술, 춤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특정 민족들의 커뮤니티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독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 소수 민족들이나 이민자들의

나라들을 다룬 읽기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민족 문화들에 대해 소개하고 교육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관련 독서 자료는 유럽과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다루는 정규 수업 시간 동안에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다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마다 2월은 ‘아프리카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위해 특정한 달을 지정한 취지는 흑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인종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 그룹들의 문화와 그들이 이룬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비록 아프리카계 캐나다인들의 역사를 학교의 교육 과정 내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별도의 달을 지정하여 다루는 것은 아프리카인들의 역사적 소외를 부각시키는 일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지 28일 동안만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체 교육 체계 내에서 이 주제를 경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며, 만약 흑인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1년 내내 가르치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 시킨다면, 이처럼 한 달을 따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James & Wood는 아프리카 역사의 달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은 학교 위원회가 흑인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와 높은 중퇴율, 그리고 이에 대한 미흡한 학교의 대응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캐나다 역사 교육에 캐나다 건국에 기여한 토착민들의 역사,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역사 및 아프리카계 캐나다인들의 역사 등을 포함시킬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캐나다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또한, 다양한 다문화주의 교육 정책들은 문화적 종교적 차이점들을 조정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러한 차이점들은 충분히 조율되지

25) James, C. E. & Wood, M.(2005). p. 103.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94년 Émilie Ouimet라는 한 어린 이슬람교 여학생은 퀘백의 한 학교로부터 정학 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 학생이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쓰는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학교의 의복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학생에게 정학을 내린 학교 교장에 따르면, 이 여학생이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곧 학교가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과는 다른 종교적 표현을 수용하고 조정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차이점을 존중하기 보다는 이를 없애고 학생들의 균등화를 지향하는 동화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학교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기조로 삼아 여러 가지 민족 문화적 차이점들을 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²⁶⁾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민족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한편, 인종적, 언어적 소수민 학생들을 통합시키고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평등의 기회를 신장하며, 학생들이 지닌 문화적 유산 및 민족적 뿌리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며,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그룹들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믿었다.²⁷⁾

이처럼,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각 주정부 및 학교 위원회들은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26) James, C. E. & Wood, M.(2005).

27) James, C. E. & Wood, M.(2005).

제 6 절 인종과 교육

인종 차별(racism)이란 ‘인종이 인간의 특성과 능력에 있어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인종적 차이가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내재적 우월성을 양산한다는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²⁸⁾ 인종 차별과 함께 많이 쓰이는 용어는 ‘인종차별화’(racialization)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지목됨으로써 이들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지칭한다. 인종 차별화의 문제는 캐나다 사회에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이자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을 통해서, 캐나다의 인종과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인종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세기 캐나다는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폈으며,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격리된 학교들이 존재했다. 이 학교들은 특히 흑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노바스코시아와 온타리오의 경우, 분리된 학교들의 설립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학교들이 많았으며,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같은 지역에도 이러한 학교들이 존재했다. 교육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는 이와 같이 특정 학생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했는데, 1849에 만들어진 학교법은, 편의에 따라 유색 인종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²⁹⁾ 이처럼 유색 인종의 학생들을 위한 격리된 학교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색 인종, 특히,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28) Merriam-Webster Dictionary(2008).

29) Chan, A. S.(2007).

심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당시의 학교 이사들은 ‘깜둥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언급하곤 하였다.³⁰⁾

온타리오 주는 1850년에 ‘분리된 학교 법’(Separate School Act)을 통해, 다섯 이상의 흑인 가족 그룹은 학교 이사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열두 가정 또는 그 이상의 백인 가정들은 학교 측에 흑인들을 위한 분리된 학교를 지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Walker, 1997).³¹⁾ 이러한 법의 제정은 백인 가정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흑인 가정들로 하여금 분리된 학교 교육 기관에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1850년에 제정된 ‘분리된 학교 법’은 분리된 학교가 없을 때에는, 흑인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흑인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Chan, 2007).

분리된 학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들 학교에는 종종 실력 있는 교사들이 부족했고, 학생들의 출석은 불규칙했으며, 도서관 같은 시설들도 없었다. 심지어 몇몇 구역에서는 흑인들로부터 걷은 세금이 백인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위해 쓰이기도 했다(Winks, 1972).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교사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교사들은 온타리오에 있는 분리된 학교 체계에 대해 항의하였고, 1864년 토론토에서 열린 교사 연합 협회는 격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Dennis Hill이라는 한 흑인이 학교 지구에 자신의 두 자녀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흑인들을 위한 학교가 4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정은 흑인들을 위한 분리된 학교가 지어졌다면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의무적이라고 판결하였다.

30) Winks, R.(1972).

31) Walker, J. W.(1997).

노바스코시아에는 1960년대까지 이러한 학교들이 유지되었고, 온타리오에도 1965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분리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분리된 학교들은 1950년대 초에 문을 닫았다.

이러한 차별적 학교 교육은 아프리카계 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계 학생들에게도 행해졌다. 1901년 빅토리아의 학교 관계자들은 중국계 학생들을 그들의 학교로부터 격리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계 학생들은 19세기 말까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은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이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의 발달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1908년부터 1922년 사이 빅토리아와 벤쿠버의 학교 위원회들은 중국학생들의 부분적인 격리를 실행하였으나, 이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중국계 부모들의 거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1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계 학생들만 분리된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23년 말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혼합된 인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급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³²⁾

학교에서 중국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학생들을 배척하는 분위기는 만연했고, 1914년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공립학교에서 일본계 학생들을 격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종종 근거 없는 주장에 바탕하고 있었는데, 벤쿠버에 있는 한 학부모-교사 연합회는 일본계 학생들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눈의 전염성 질환인 트라코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33개 학교들을 조사한 후 대다수 학교의 교장들은 동양계 학생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결국, 벤쿠버의 학교 위원회는 일본계 학생들의 분리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³³⁾ 1941년 12월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자, 캐나다 정부는 일본계 캐

32) Chan, A. S.(2007).

33) Adachi, K.(1976).

나다인들이 국가적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논쟁하였다. 그리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일본인들을 브리티쉬 콜롬비아 연안으로 후송시키는 정부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일본 학생들에 대한 후송은 1942년 봄에 후송은 시작되었고, 밴쿠버 근처 커뮤니티에 살고 있던 일본계 아이들은 그들이 다니던 일반 학급을 떠나 학교로 사용되던 임시 건물로 보내졌다. 1942년 9월, 수천 명의 일본계 학생들이 밴쿠버에 있는 학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은 겨울이 오기 전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있는 캠프로 보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Chan은 학교의 흑인 및 중국계, 일본계 아이들에 대한 분리 정책은, 학교 위원회 및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그들의 정책과 실행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인종 차별화를 어떻게 조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 한다.³⁴⁾

한편, 이와 같은 인종 차별과 관련된 관행들은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비록 다문화주의 정책에는 인종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에 이어 만들어진 여러 법들은 인종 및 민족적 근원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통과된 ‘캐나다 인권 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캐나다인들을 인종적, 민족적 이유에 근거한 차별들로부터 보호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82년에 통과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르면, 인종과 국가, 민족적 출신지 및 피부색,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캐나다인들을 보호함을 언급하였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정책들은, 비록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각 주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34) Chan, A. S.(2007), p. 136.

1974년에는 사스카추완이 캐나다 최초로 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다문화주의 법을 승인한 주가 되었으며, 1977년 온타리오 주 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알버타 주가, 1992년에는 마니토바 주가, 그리고 1993년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각각 다문화주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문화주의 법의 도입과 함께 주정부들은 인종 차별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1993년 온타리오 정부는 모든 학교 구역에서 반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종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은 인종 문제가 학생들의 학교 경험 및 학교 성적과 관련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고, 인종적 소수민에 속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종적 소수민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James(2001)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교육가들이 인종(race)을 보통 피부 색깔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고, 소수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의 문화적 결핍, 낮은 자존감, 그리고 긍정적 롤 모델의 결여에서 찾는 데에 있다고 지적 한다.³⁵⁾

또 다른 문제점은 중국계 학생들과 같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교 문제는 종종 간과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며, 대체로 학교생활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나 언어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한다.³⁶⁾

비록, 반 인종주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 학교의 교육 방식 및 교육 자료들, 그리고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35) James, C. E.(2001).

36) Pon, G.(2000).

불평등 및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들을 밝혀내는데 일조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동화주의적 접근에 바탕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 제동을 걸고,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제 7 절 다문화주의와 언어 교육 정책

1867년 캐나다 연방의 형성으로 캐나다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자, 캐나다 정부는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어는 점차 그 기반을 잃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한편, 불어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중 언어 사용주의와 이중 문화주의에 대해 점점하는 한편, 1963년 왕립 위원회를 만들어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 연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공식 언어 법(Official Languages Act)이 만들어지게 되어 영어와 불어는 국회에서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은 영어 또는 불어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8년에 통과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영어와 불어 이외에 다른 언어들의 사용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의 사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1969년 공식 언어 법이 통과된 바로 직후 대부분의 주들은 제 2언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며, 불어나 영어의 몰입 교육³⁷⁾은 대단히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퀘벡 정부는 불어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

37) 제 2언어를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언어 몰입 교육(language immersion)은 가르칠 언어를 이용하여 일반 교과목 수업을 하는 등, 목표어의 사용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교수 방법을 말한다.

다고 느꼈고, 마침내 1977년에는 법안 101조(Bill 101)³⁸⁾를 만들어, 불어를 퀘백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퀘백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불어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안의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들이 불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퀘백주 정부는 일터에서의 공식 언어를 불어로 지정하고, 주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민자들을 위한 불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92년 이전 시기에 성인 이민자들을 위한 제 2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남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생각되어 주로 성인 남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었다. 단지 ‘정착 언어 프로그램’(Settlement Language Program)이라 불리는 몇 개의 프로그램들이 일하지 않는 성인 이민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 1992년 연방 정부는 ‘캐나다에 새로 온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이라는 프로그램을 캐나다 영어권 지역에 도입하여 제 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퀘백의 경우는 퀘백 지역의 불어권화(francophonization)를 위해 LINC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 2언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³⁹⁾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LINC는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⁴⁰⁾

-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 및 질에 있어서 보다 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8)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프랑스어 헌장) 이라고도 불리우는 법안 101조는 불어를 퀘백주 및 퀘백 법정의 공식어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불어는 일터와 교육 현장, 상업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상어가 되었고,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불어 교육은 퀘백 지역 뿐 아니라 캐나다의 다른 지방에서도 필수 사항이 되었다.

39) Joshee, R. & Johnson, L.(2007).

40)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 (1991), p. 3.

- 언어 교육의 비용 효율화를 극대화 한다.
-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의 유연성을 높인다.
- 정부와 비정부 기관들, 사(私)기관들 및 다른 파트너들 간에 보다 큰 협력과 조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캐나다의 가치들에 관한 내용을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는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가치를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우선, 연방 정부는 LINC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최근에 조사된 LINC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가치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양성, 법적 권리, 성별 간 동등함 등에 대해 이야기 한 반면, 상당수의 교사들(22%)은 교실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단지 언어 수업에만 집중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그 운영에 있어서 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마니토바의 학생들은 이 수업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온타리오의 학생들은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5 단계 까지만 들을 수 있었고, 알버타의 학생들은 4 단계까지만, 그리고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시아의 학생들은 3 단계 까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낮은 단계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일수록, 교사들이 캐나다의 가치에 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적어졌다.⁴¹⁾

41) Derwing, T. M. & Munro, M. J.(2007).

수업의 질도 문제가 되었다. 비록 캐나다 내에 영어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연방 정부가 사(私)기관들과 비정부 기관들 및 고등 교육 기관들과 LINC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들 간에 경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수업의 질에 관한 문제는 주정부의 관할이라고 여겨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오직 비용적 효율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기관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애쓰게 되었다.⁴²⁾ 교사들의 자격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주들은 제 2언어로서의 영어를 반드시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 2언어로서의 영어 교사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LINC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방 정부 및 주정부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언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르면, 공식 언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소수 언어 그룹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Gourd⁴³⁾는 언어 정책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의 언어 정책은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과 같이 언어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공식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971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1988년에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국가의 공식 언어인 영어나 불어를 교육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정책으로서 이러한 타입의 언어 정책에 속한다. 첫 번째 타입의 언어 정책이 하나의 지배 도구로

42) Derwing, T. M. & Munro, M. J.(2007).

43) Gourd, K. M.(2007).

서 사용된 예는 1867년 연방 정부 시대에 캐나다 정부가 두 개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는 보호하고 옹호했던 반면, 토착민들의 언어들을 경시했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타입의 언어 정책은 언어적 배경에 따라 이민을 제안하는 법과도 관련되는데, 즉, 국가의 공식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러한 언어 정책에 속한다. 이러한 예는 특히 퀘벡 정부가 불어권 출신의 이민자들이나 불어를 말하는 이민자들에게 이민 자격 평가 시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언어 정책들을 통해 캐나다 주류 사회에 속한 캐나다인들 및 그들의 언어를 옹호하고 공식 언어들의 사용을 통해 캐나다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 및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다문화 교육이 공교육 기관에서 실시되기 까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사회적 현실로서 다문화를 캐나다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수민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민감해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힘쓰며,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역사적 과정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학교 교육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1971년 캐나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다문화주의 정책과 같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발달하게 된 과정과 이러한 정책적 발달이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캐나다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마련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시점은 제 2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Joshee & Johnson(2007)은 이 가운데 특히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⁴⁴⁾

첫째, 이전까지 캐나다 정부가 제한적 이민 정책을 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에는 이미 캐나다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외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 이었다. 둘째, 당시 캐나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철도 사업은 캐나다 전역에 다문화 박람회(multicultural fairs)를 지지하도록 하였고, 캐나다의 정체성을 문화들의 모자이크로서 재정의 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학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일종의 자산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넷째, 당시의 캐나다 연방 정부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그들의 출신지에 관계없이 캐나다 전역을 지지해 주도록 하는 데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민족적, 문화적 커뮤니티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민족 그룹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들의 언론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다섯째, 캐나다를 무자비한 나치와는 다른 국민들로 정의하고 싶은 바램 때문에, 전시의 선전물들은 캐나다를 다양성을 환영하는 국가로 묘사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캐나다 정부는 현재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위한 초석을 닦게 되었다.⁴⁵⁾ 하지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

44) Joshee, R., & Johnson, L.(2007).

45) Joshee, R., & Johnson, L.(2007).

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것은 여러 단계들을 거쳐 발달해 왔다. 다음을 통해서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어떠한 단계들을 걸쳐 발달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여러 국면들을 거치며 발달하게 되었다.

우선, 다문화주의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다문화주의의 도입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동화 정책 대신 문화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공식 언어들 가운데 하나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초 다문화주의가 도입된 초창기에 그 중점은 문화적 지원과 통합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다양성에 기반하여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자, 다문화주의는 이제 그룹들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다른 인종 문화 그룹들에 대해 보이는 차별적 태도는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당시의 다문화주의의 중점은 그룹 간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민들 및 공공 기관들이 다양성에 보다 민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세 번째 단계는 반 인종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에 대한 편견 문제는 하나의 이슈가 되었으며, 이들은 직업적 진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미디어, 법정, 의료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에 호소하여 반 인종주의를 지원하게 되었고, 반 인종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인종 차별 뿐만 아니라, 구조적, 기관적 차원의 인종 차별주의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평등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는데, 다문화주의 이전 시기에는 평등성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던 반면, 이 단계에는 평등성이 신체적 특징이나 인종과 관련하여 재해석되어, 신체적 특징 및 인종, 민족 문화적 특징 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소수민족들의 참여가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이전 단계의 모든 특징들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생각을 ‘다문화적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교육을 ‘다문화적 시민권 교육’(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 부른다. 즉, 이 단계는 문화적 지원과 이민자들의 적응, 인권, 인종 문화 단체들 간의 관계, 반 인종주의 및 평등성 등 모든 것을 포괄하며, 다양성, 민족적 인종적 포용과 수용, 공정성 등에 바탕을 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게 된다.⁴⁶⁾

한편, 캐나다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크게 세 단계의 발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 단계들은 크게 1971년 이전,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⁴⁷⁾

우선, 1971년 이전 시기인 다문화주의 초기 단계는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이자, 캐나다 사

46) McLeod, K. A., & Krugly-Smoiska, E.(1997).

47)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은 캐나다의 국회 도서관에서 2009년 발행한 보고서 ‘anadian Multiculturalism’ Dewing, Michael)에 근거함.

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점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캐나다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에 있어서 영국식 모델을 그대로 본뜨고자 하였다. 심지어, 1947년 캐나다 시민법(Canadian Citizenship Act)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모든 캐나다인들은 영국인들의 신민들로 정의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의 영국적 토대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캐나다의 중앙 당국은 인종적, 민족적 차이점들이 국익에 해가 되며, 캐나다 통합에 저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으로부터 몰려든 이민자들은 캐나다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있어서 다른 인종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재고해 보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토착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퀘백 사람들의 국가주의에 대한 주장과 소수민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자, 캐나다 정부가 내세우던 기존의 동화 정책은 힘을 잃게 되고, 다문화주의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두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는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1969년, 이중 언어주의 및 이중 문화주의에 관여한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는 그들이 발표한 'Book Fou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인, 영국인 이외에 토착민이나 다른 민족 그룹들이 캐나다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 기여한 바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왕립 위원회는 여러 민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캐나다 사회로 '동화'되는 것이 아닌 '통합'되기를 권장하였다. 이것은 이후 혁신적인 민족 문화 정책의 도입을 앞당기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71년에 발표되고 그 이후 몇 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다문화주의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족 문화

단체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조력한다. 둘째, 민족 문화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들을 극복한다. 셋째, 캐나다의 모든 민족 문화 집단들 간의 창조적인 상호 교환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이민자들이 적어도 공식 언어들 가운데 하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문화 요소들 가운데 선택한 요소들을 지닐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캐나다의 주요 기관들에 민족적 소수민들의 온전한 개입과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했는데, 이 정책이 실행된 초기 10년 동안에는 거의 2억 달러의 돈을 언어와 문화 유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1972년 국무부 내에 다문화 부서(Multicultural Directorate)를 두어 다문화 관련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돕도록 하였다. 이 부서는 인권 및 인종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시민권, 이민 등의 분야에 있어서 소수민들을 돕는 활동들을 지원했다. 또한, 이듬해인 1973년에는 다문화주의 부서(Ministry of Multiculturalism)가 만들어져, 정부 부서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관련 계획들의 실행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여러 민족 단체들 간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였다.⁴⁸⁾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세 번째 시기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제도화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다문화 정책들이 점차 제도화,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는 이민자들로 인해 캐나다 대도시의 인구 구성이 보다 다양화 되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48) Derwing, M.(2009).

대두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여러 기관들이 새로운 이민자 집단들의 유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하였고, 소수민족 그룹들과 다수민족 그룹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반 차별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초기의 다문화주의 정책들은 주로 다양한 문화 민족 단체들이 발간하는 언론 매체나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들을 보존하고 이들을 공유하는 데에 주력했던 반면, 새롭게 탄생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들은 제도적 변화와 기회 균등을 위한 확고한 조치,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는 장벽들의 제거를 강조하였다.

다문화주의는 1982년에 채택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헌장의 제 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 헌장은 캐나다인들의 다문화적 유산의 보존 및 증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헌장의 이 구절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사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넓은 틀 내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즉, 이것은 캐나다 법정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캐나다 법정이 개인과 다문화 공동체의 권리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 이것은 하나의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은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 국민이 법아래 평등하며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차별을 근절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헌장의 제 15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 그리고 법아래 평등하며, 차별없이, 특히 인종과 국가, 민족적 출신지, 피부색, 종교, 성, 나이, 그리고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84년 눈에 띄는 소수민들(Visible Minorities)을 위해 특별 국회 위원회가 ‘Equality Now!’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상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1987년 이 위원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것과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88년 7월, 분명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지닌 새로운 다문화주의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바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이 국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킨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인정하며, 이것이 연방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것은 다문화주의를 연방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캐나다 사회에 기본이 되는 특징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보존과 발전을 꾀하고, 다양한 언어들과 문화들의 보전에 힘쓰며, 차별을 줄이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들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캐나다 사회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점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이를 통합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모든 캐나다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온전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캐나다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종 차별을 근절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와 평등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하였고, 모든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지닐 수 있는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캐나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전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다문화주의를, 모든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사회 기관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캐나다 기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긍정적 도구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캐나다 주요 기관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원 분배, 그리고 우선권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하나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소수자들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문화주의 법이 도입되자, 과거 소수민들에게 행하였던 잘못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88년 9월 캐나다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계 캐나다인들의 재산 및 그들의 시민권을 압수하고 억류했던 일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와 일본계 캐나다인 연합은 일본계 캐나다인 재건 협정에 싸인했고, 연방 정부는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을 설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06년 캐나다 정부는 1923년까지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했던 일과 1947년까지 중국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였다.

1991년에는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부서를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 되었는데, 새롭게 창출된 이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다.

- 인종 관계 및 상호 문화적 이해
: 캐나다인들과 캐나다의 기관들이 인종적 평등과 다문화주의 원칙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수용하며 실행하도록 촉진한다.
- 유산 문화 및 언어(Heritage Cultures and Languages)
: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 민족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커뮤니티 지원 및 참여

: 개인들과 캐나다의 인종적, 민족 문화적 소수민 출신의 개인 및 단체들이 캐나다 생활에 온전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기의 다문화주의 정책들은 주로 문화적 보호와 상호 문화적 공유에 주력한 반면, 새로워진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 문화적 이해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서는 1993년에 없어지고 캐나다 유산 부서(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에 통합되었고, 다양한 단체들 및 개인들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1995년 다문화주의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997년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던 국무장관은 사회적 정의(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 시민의 참여(모든 출신지의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정체성(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캐나다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반영하는 사회를 조성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겨냥하여 개정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및 문화 단체들이 최대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의 개발을 돕는다.
-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과 증오에서 비롯된 활동들에 대항하는 커뮤니티 단체들의 계획과 대책을 지원한다.
-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기관들의 역량을 증진시킨다.

- 연방 부서들과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포용적 정책⁴⁹⁾ 및 프로그램, 실행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조력한다.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공적 인식과 이해, 그리고 대중적 대화를 증진 시킨다.

2002년 11월, 정부는 매년 6월 27일을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날로 선정함을 공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05년 11월 23일 다양성과 문화적 표현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유네스코(UNESCO)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국가들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권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2008년 10월, 다문화주의에 대한 책임은 캐나다 유산 담당 부서에서 시민권과 이민을 위한 부서(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로 옮겨졌으며, 개정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새로운 캐나다인들과 문화 단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지원한다.
- 멘토쉽과 자원봉사, 리더십, 그리고 위협에 처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 교육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도록 한다.
- 문화적 사회적 배제와 과격화(radicaliza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률 등 캐나다 가치들을 홍보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의 공식적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인종 차별에 대한 보다 심

49) Sen(2001)에 따르면,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란, 폭넓게 공유된 사회적 경험과 적극적 참여, 개인을 위한 삶의 균등한 기회,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복지 수준 성취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회로 정의된다.

도 있는 이해를 위해, 연구 및 자료 수집, 국가 정보 베이스의 발달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기구는, 처음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2천 4백만 달러의 기금으로 운영했으나, 이후 투자 기금,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2년 11월 매월 6월 27일을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날’(Canadian Multiculturalism Day)로 제정한 것에 이어, 2005년 2월, 캐나다 정부는 5천 6백만 달러를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캐나다의 실천 계획’(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에 5년간에 걸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고, 2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을 ‘인정(Acknowledgement), 기념(Commemoration), 그리고 교육(Education)’(ACE)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에 3년간 할당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나 당시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8월과 11월에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이탈리아계 캐나다인, 중국계 캐나다인 커뮤니티들과 합의했다.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는, 2005년 11월 캐나다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유네스코 협약을 수락했는데, 이 협약은 서적, 영화, TV 프로그램 및 다른 문화적 자산과 서비스들은 상업적 가치를 넘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국가들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을 조장하는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 하였다.

2008년 10월 다문화주의에 대한 책임은 ‘캐나다 유산 부서’(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로부터 ‘시민권과 이민 부서’(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로 이전되었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새로 이주한 캐나다인들과 문화적 커뮤니티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지원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위협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십, 자원봉사, 리더십, 시민 교육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 문화적, 사회적 배제 및 과격화(radicalization)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 및 캐나다적 가치들(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의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2009년 캐나다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교육 및 회고, 연구에 관한 국제 협력 대책 위원회’(Task For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olocaust Education, Remembrance and Research)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주의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에 제시된 <표 3>과 같다.

<표 3> 캐나다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연표(Dewing, 2009)

연도	정책 내용
1948 -	• 캐나다는 성과 인종, 종교, 문화 및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준수함을 발표함.
1960 -	• 국회는 ‘권리에 관한 캐나다 법령’(Canadian Bill of Rights)을 통과시킴. 이것은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및 성에 따른 차별을 금함.
1967 -	• 20세기 초부터 존재하던 인종 차별적 내용이 담긴 캐나다의 이민법이 금지됨.

연 도	정책 내용
19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는 이중 언어주의 및 이중 문화주의에 관한 내용과 캐나다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 다른 민족 그룹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내용을 ‘Book four’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함.
19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이것은 1969년 1월 효력을 발생하게 됨.
19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는 이중 언어의 틀 내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발표함.
19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장관을 처음으로 임명.
19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장관에 대한 고문 위원회로 ‘다문화주의에 관한 캐나다 자문 위원회’(Canadian Consultative Council on Multiculturalism)가 설립됨.
19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스카추완(Saskatchewan)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입법을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됨.
19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채택함. 이를 위해 캐나다 인권을 감시하고 중재하는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헌법에서의 평등권 및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인정함.
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사회의 눈에 띄는 소수민들(Visible Minorities)에 관한 특별 하원 위원회는 ‘지금 평등을!(Equality Now!)’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에 관한 상설 하원 위원회(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설립.

제 4 장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연도	정책 내용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당의 지지를 얻어 국회가 채택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 Act)은 1988년 7월 21일 왕실의 승인을 얻게 됨. • 연방 정부는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계 캐나다인들에 대한 잘못된 감금과 시민권 박탈 및 재산을 압수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19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 캐나다’(Multiculturalism in Canada)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실행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함.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월 17일 ‘다문화주의 및 시민권법에 관한 부처’(Department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Act)는 왕실의 동의를 얻음. 같은 해 4월 21일에, 이 새로운 부처는 Gerry Wiener를 첫 번째 장관으로 지명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발족됨.
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에 선출된 자유 정권(Liberal government)은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캐나다(Citizenship Canada)가 두 개의 주요 부서에 나누어져야 함을 발표함: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이전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캐나다 유산 부처’(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로 병합되어야 하며, 시민권 프로그램들은 새로이 설립된 ‘시민권 및 이민 부처’(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으로 병합되어야 함을 발표함.
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는 국가의 민족 그룹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과거에 행한 수모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이전의 보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억류했던 일본계 캐나다인들의 가족들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했던 전례와는 대조되는 결정임.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는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을 설립.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

연도	정책 내용
19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국무 장관은 개정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발표함.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는 매년 6월 27일을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날로 지정.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는, 전쟁 기간 동안이나 당시의 이민 정책들로 인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고난을 겪은 그룹들의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여러 계획들을 발표함. • 3월, 연방 정부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캐나다: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캐나다의 시행 계획’(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을 발표함. • 8월과 11월 사이, 연방 정부는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이탈리아계 캐나다인 및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커뮤니티와 ‘인정, 기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Acknowledgement, Commemoration, and Education Program)에 합의함.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는 1923년까지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head tax)와 이에 따라 1947년까지 중국계 이민자들을 배제했던 일에 대해 정식 사과함. • 연방 정부는 민족문화 커뮤니티들의 역사적 경험 및 이들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한 ‘커뮤니티 역사 인식 프로그램(Community Historical Recognition Program)’ 및 ‘국가의 역사 인식 프로그램(National Historical Recognition Program)’을 발표함.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에 대한 책무를 ‘캐나다 유산 부처(Department of Canadian Heriage)’에서 ‘시민법 및 이민 부처(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로 이전.
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교육 및 회고, 연구에 관한 국제 협력 대책 위원회(Task For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olocaust Education, Rememberance and Research)’의 정식 회원국이 됨.

앞서 살펴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를 정리하면, 국가 건국 초기와 20세기 전반에 걸쳐 주로 동화주의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을 관리하던 캐나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에 따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정당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1971년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정부 기관 내에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게 되었고 정부 예산을 다문화주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투자하는 등 다문화주의 정책은 체계를 갖추어 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법적 차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의 제정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의 방향키를 제시하게 되었다.

제 2 절 캐나다 주정부들의 다문화주의 정책

캐나다의 모든 주들은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 하였고, 현재 10개의 주들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알버타, 사스카추완, 마니토바, 퀘벡, 그리고 노바 스코시아의 6개 주가 다문화주의를 입법화 하였다. 다음을 통해서는 캐나다 각 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⁵⁰⁾

(1) 브리티시 콜롬비아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1993년 다문화주의 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주정부로 하여금 그 업무 및 프로그램들을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다문

50) 캐나다 주정부들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Michael Dewing에 의해 쓰여지고 캐나다 국회에 의해 발행된 'Canadian Multiculturalis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화적 현실에 민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장관들과 정부 기관들은 다문화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기술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문화주의의 임무를 맡은 장관은 'Report on Multiculturalism: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고 있다.

(2) 온타리오

온타리오는 1977년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언했지만,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법제화는 1982년에 이루어졌다. '시민권과 문화법 부서'(Ministry of Citizenship and Culture)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온타리오 사회의 다원적 성격을 인정하고, 모든 온타리오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적 유산의 공유를 권장하고 있다.

(3) 퀘백

퀘백주는 다문화주의와 비슷한 정책으로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라는 정책을 폈다. 이것은 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들 간의 수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 작용과 관련된 정책이었다. 이것이 다른 다문화주의 정책들과 다른 점은, 다양한 문화들 간의 내재적 동등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프랑스어의 우위성과 퀘백 문화의 틀 내에서 다양성이 용인되고 권장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퀘백 주정부는 1990년도 말에 'Let's Build Quebec Together: A Policy Statement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

- 퀘백은 불어를 말하는 사회이다.
- 퀘백은 모든 사람들이 공공 생활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는 민주 사회이다.

- 퀘백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는, 퀘백이 자신을 프랑스어권이자 다원주의 사회임을 밝히고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과, 이민자들은 퀘백인들과 협력하여 퀘백의 건설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4) 뉴브런즈윅

뉴브런즈윅은 1986년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평등성, 가치의 인정, 문화적 유산의 보존, 그리고 참여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뉴브런즈윅의 비즈니스 담당 장관은 인구 성장 비서직(Population Growth Secretariat)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주민들의 정착 및 다문화 커뮤니티들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주정부는 정부 부처의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 노바스코시아

노바스코시아는 1989년에 다문화주의 법을 채택하였다. ‘다문화주의를 증진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법’(The Act to Promote and Preserve Multiculturalism)은 다문화주의를 노바스코시아 사회의 내재적 특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문화 커뮤니티들 간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쓸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 법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내각 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Multiculturalism)와 ‘다문화 자문 위원회’(Multicultural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전자는 정부의 정책들의 적용을 감수하는 한편, 후자는 내각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많은 주정부들은 연방에서 채택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은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대체로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존재한다. 다음을 통해서는 다문화주의를 대하는 캐나다인들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다문화주의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반론은 여전히 캐나다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10년에 수행된 Angus Reid 여론 조사에 따르면, 55%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이것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4%의 응답자들은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3%의 응답자들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모자이크 개념을 지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인들이 다양성을 캐나다의 특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캐나다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¹⁾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 정책이 캐나다의 이민자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예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Kymlicka는 이민자들과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들 간에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상호 수용도, 이민자들이 캐나다 시민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 높은 수준의 공식 언어 사용 능력, 이민자들의 높은 정치 참여도 등을 들고 있다.⁵²⁾

51) Hyman et al.(2011).

52) Kymlicka(1998), (2010).

공유된 정체성과 소속감은 서구 민주화 국가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효율성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General Social Survey(GSS)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들 가운데 85%가 캐나다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민자들은 84%가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캐나다 사회에 대한 이민자들의 높은 소속감을 보여주었다.⁵³⁾

다양한 출판물들과 여론 조사들은 캐나다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지만, 많은 캐나다인들은 아직도 다문화주의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퀘백 사람들은 다문화주의의 도입 단계부터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저항감을 표현했는데, 그들은 연방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인식하였다. 많은 퀘백 사람들은 다문화주의가 퀘백의 차별화된 사회적 지위를 영어를 말하는 캐나다의 지배하에 있는 소수 민족 문화 수준으로 저하시켰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정책이 프랑스어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들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들의 파트너십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다문화주의가 국가적 통합에 위협이 되며, 소수 민족들의 슬럼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캐나다가 통합된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캐나다 시민들은 캐나다인이 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문화주의는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며, 그 이유는 이것이 캐나다인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⁵⁵⁾

53) Statistics Canada(2003).

54) Derwing(2009).

55) Derwing(2009).

다문화주의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몇몇 사회 그룹들이 주류 사회 그룹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등의 지위를 견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면서 이들을 의존적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⁵⁶⁾ 한편,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문화주의가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Bissoondath⁵⁷⁾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캐나다의 주류 문화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택하도록 이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Granatstein⁵⁸⁾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캐나다 학교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캐나다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 한다. 그는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들에게 까지도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Kymlicka⁵⁹⁾는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율, 높은 수준의 공식 언어 구사력, 캐나다인들과 이민자들 간의 높은 결혼율 등을 근거로 들면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들은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민족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캐나다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56) Hyman et al.(2011).

57) Bissoondath, N.(1994).

58) Granatstein, J. L.(1998).

59) Kymlicka, W.(1998).

제 5 장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킨 국가이다.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이며, 이 법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장을 통해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밖에도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법률들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 법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연합회가 발행한 다문화 교육 관련 지침과 온타리오 주의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안내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1988년 국회에 의해 통과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캐나다가 다문화적 유산을 인정하며 이것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인종과 출신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간직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을 통해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전문을 소개하고,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R.S.C., 1985, c. 24(4th supp.)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법

서 문

캐나다 헌법은 모든 개인들이 법 앞에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종교, 사상, 믿음, 의견, 표현, 평화로운 집회 및 협회를 소집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보장 되므로,

그리고 캐나다 헌법은 캐나다인들의 다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므로,

그리고 캐나다 헌법은 캐나다 토착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므로,

그리고 캐나다 헌법과 공식 언어 법(Official Languages Act)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며, 이것은 다른 어떤 언어를 습득하거나 사용할 권리나 특권을 철폐하거나 꺾어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시민권 법(Citizenship Act)은 모든 캐나다인들이, 출생에 의해서이건 선택에 의해서이건 간에, 동일한 권리와 힘, 특권을 부여받으며,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하므로,

그리고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모든 개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합치된다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갖고자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인종과 국가, 출신 민족 혹은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지된 차별도 바로잡기 위해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을 설립하므로,

그리고 캐나다는 ‘모든 형태의 인종적 차별의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지지하며, 이 협약은 모든 인간이 법아래 동등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차별에 대한 선동에 대항하여 법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캐나다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권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지지하며, 이 협약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되므로,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들이 인종, 국가 혹은 민족 출신, 피부색 및 종교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점을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 특징으로 인정하며, 캐나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캐나다인들의 평등성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는 한 편, 캐나다인들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문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왕 폐하,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개 요

1. 이 법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해 석

2. 이 법에서,
“연방 기관”이란 캐나다 정부의 다음 기관들 가운데 어떠한 기관도 의미할 수 있다.
(a) 국회의 법을 따르거나 의회 의장의 권위하에 정부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설립된 부처, 의회, 위원회 혹은 자문 위원회, 혹은 다른 단체나 사무소, 그리고

- (b) 재정 관리 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의 제 2항에서 정의한 대로 부처 법인 혹은 연방 또는 주정부에 소속된 법인

그러나 다음의 기관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 (c) 어떤 의회 기관 혹은 북서부 영토 혹은 입법부의 정부 혹은 유콘(Yukon) 혹은 누나뫼트(Nunavut)의 정부
- (d) 인디언 그룹이나 다른 토착민 그룹과 관련된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인디언 그룹이나 캐나다 원주민 지역 의회, 혹은 다른 단체

“장관(Minister)”은 이 법을 위한 목적을 위해 의회에서 의장에 의해 지명된, 캐나다를 위한 여왕의 추밀원(Queen’s Privy Council)⁶⁰⁾ 단원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 3. (1) 다문화주의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a)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캐나다 사회의 모든 일원들이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 (b)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유산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점과, 이것이 캐나다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소중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60) Privy Council: (영국의) 추밀원: 국왕을 위한 정치 문제 자문단

- (c) 캐나다 사회의 모든 측면의 지속적 변화와 형성에 있어서 모든 출신지의 개인들과 커뮤니티들의 전적인 공정한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벽도 제거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d) 동일한 출신지를 공유하는 일원들이 모여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정하고, 캐나다 사회에 대한 이들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며, 이들의 발달을 증진시킨다.
 - (e)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법 아래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f)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기관들이 캐나다의 다문화적 성격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력한다.
 - (g) 다른 출신지의 개인들이나 커뮤니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이해와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 (h)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인정과 좋은 인식을 함양하며, 이러한 문화들을 반영하는 표현들을 증진시킨다.
 - (i) 캐나다 공식 언어들의 지위와 사용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나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들의 사용을 보존하고 증진 시킨다: 그리고
 - (j)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에 대한 국가적 임무와 조화를 이루면서 캐나다 전역에 다문화주의를 발달시킨다.
- (2)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연방 기관들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 (a) 모든 출신지의 캐나다인들이 이 기관들에서 일자리를 얻고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 (b) 캐나다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출신지의 개인들과 커뮤니티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들과 프로그램들, 실행들을 홍보한다.

- (c) 캐나다 사회 일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정책들과 프로그램들, 실행들을 홍보한다.
- (d)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과 프로그램들, 실행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 자료들을 수집한다.
- (e)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출신지의 개인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활용한다.
- (f)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에 민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활동들을 수행한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함축적 의미

- 4. 각료는 정부의 다른 각료들과 협의하여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협조적 접근을 격려하고 증진시킬 것이며, 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실천 계획들의 발달과 실행에 대해 조언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 5. (1) 각료는 앞서 말한 것에 대한 대부분을 제한함 없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 (a) 개인들과 기구들, 그리고 기관들이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을 캐나다에서 또는 해외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하고 조력한다.
 - (b)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지원하며, 이 분야에 대한 장학금을 조성한다.
 - (c) 캐나다의 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의 상호 교환과 협력을 권장하고 증진시킨다.
 - (d) 공공 기관들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노동 기구들, 자원 봉사 단체와 다른 사적 기관들이 모든 출신지의 개인들과

이들의 커뮤니티들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캐나다 사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격려하며 지원하고,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신장시킨다.

- (e)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존과 향상, 공유, 그리고 발전하는 표현들을 장려한다.
- (f)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에 공헌하는 모든 언어들의 습득과 유지,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 (g) 어떠한 형태의 차별적 장벽, 특히, 인종 혹은 국가적, 민족적 출신지에 근거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운영하는 민족 문화적 소수민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 (h)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를 보존하고 향상시키며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들과 단체들, 기관들을 지원한다.
- (i)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같이, 어떤 다른 연방 기관에 부가된 법에 의해서가 아닌,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들에 착수한다.

(2) 각료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에 관한 한 어떠한 주정부와도 협정을 맺을 수 있다.

(3) 각료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적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의 의장의 동의하에 외국의 어떤 주정부와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6. (1)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각료 이외에 정부의 다른 각료들은 그들이 각자 맡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2)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각료 이외에, 정부의 각료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에 관한 한 어떤 주와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7. (1)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각료는, 이 법의 실행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어떤 다른 사안과 관련하여 각료에게 조언하고 조력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료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문화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기관들과의 협의 하에, 그 위원회 구성원들을 임명하고 의장과 다른 각료들을 지명할 수 있다.
- (2) 자문 위원회의 각각의 구성원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각료에 의해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될 것이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초래된 적절한 여행 경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 (3) 자문 위원회의 의장은, 매 회계년도 말이 지난 후 네 달 안에, 그 해 동안의 위원회 활동과 위원회 의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 대해 각료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일반론

8. 다문화주의 담당 각료는 매 회계연도 말인 1월 31일 이후에, 국회 의사당의 다섯 번째 개회일을 넘기지 않고, 각 국회 의사당에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이 법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다.
9. 이 법의 실행과 제 8항에 따라 만들어진 보고서는 해당 목적을 위해 지명되고 구성될 수 있는 국회의 상원, 양원의 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지금까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캐나다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 정책이 표방하는 가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등과 포괄
 - 법의 보호 아래 개인들의 동등한 대우와 보호.
 - 모든 출신국가에서 온 개인들과 커뮤니티들의 캐나다 사회에의 참여를 촉진.
 - 캐나다 정부 기관들이 모든 출신지의 이민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격려.
- 이 해
 -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유산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임.
 - 다양한 출신지에서 온 단체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캐나다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공헌을 인정함.
 - 서로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다른 출신지를 가진 커뮤니티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
 - 캐나다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표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조력함.
- 언 어
 -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의 지위 및 그 사용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을 보호하고 이의 사용을 증진시킴.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전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법은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과 부딪히면서 만나게 되는 여

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모든 캐나다인들이 그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회적 통합을 조장하는 가운데, 보다 넓은 사회가 그 시민들을 환영하고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며 이를 공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기본 가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melting pot’과는 구분되는 정책임을 시사한 것으로서, 소수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버리고 캐나다의 주요 가치들과 관행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과거의 동화주의 정책을 버리고, 캐나다 사회에 대한 소속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법은 또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관행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이 캐나다라는 단일한 국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류사회의 그것과 잘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캐나다 사회의 소수 민족 그룹들은 변화하는 국가 문화에 동화되기 보다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 법은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방해물도 제거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캐나다 사회로의 포괄(inclusion)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곧, 어떤 인종 그룹도 단지 그들의 전통적 문화 관행들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관들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당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의미한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캐나다 정부가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개인들과 단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와 창조성을 증진시키는데 조력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담고 있는 가치는, 캐나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니며 발달시켜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상호 이해와 창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사회의 지배 그룹이자 주류 사회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통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을 통해 제시된 내용 가운데에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지켜나가는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발달시켜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가 이중 언어 정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며, 특히 프랑스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권과 이민 부서’(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는 매년 국회에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과 관련된 활동들 및 성취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12년 법률 제정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관한 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모든 캐나다인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임을 명시하였고, 이것이 내걸고 있는 가치를 크게 동등함과 포용성, 이해, 언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등함과 포용성

- 법의 보호 아래 개인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보호
- 모든 출신지역의 개인들과 커뮤니티들의 사회적 참여의 증진
- 캐나다 기관들이 포용적이 되도록 격려

이 해

- 캐나다 유산의 근본적인 특징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 동일한 출신지 이민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들과 그들의 캐나다 사회에 대한 역사적 기여의 인정
-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출신지의 커뮤니티들 간의 상호작용 증진
-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에 대한 장려

언 어

-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의 지위 및 그 사용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나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의 사용 장려, 보전 및 증진

2010년에서 2011년간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권과 이민 부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통합적이고 화합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기관들이 캐나다의 다양한 인구들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주의 및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다문화주의를 담당하는 시민권과 이민 부서의 활동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은 크게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의 촉진, 공공 기관들 및 연방 기관들에 대한 지원, 보완적 계획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종류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상호 문화적 이해를 돕고, 사회, 문화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들은 커뮤니티들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중적 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연방 기관들에게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¹⁾

- Inter-Action

캐나다 다문화주의 프로그램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기부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인 ‘Inter-Action’은 시민권과 이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개인들 및 커뮤니티들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기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프로젝트와 이벤트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우선,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지원금은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의 발전이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에 주어지며, 이것은 시민권과 이민 캐나다 부처에서 제안서들을 받고 이 가운데 선정된 프로젝트들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 교회 및 사원, 기관들 및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특히 시민권 및 시민의 책임에 관한 프로젝트나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커뮤니티들 간에 긍정적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젝트들에 주어졌다. 2010년에서 2011년간 운영된 다문화주의 프

61) 다문화주의 관련 프로그램들에 관한 내용은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2010-2011’에 근거함.

로그래를 통해, 캐나다 내의 커뮤니티들의 요구와 관련된 46개의 프로젝트들을 위해 약 1,30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금은 상호 문화간 혹은 종교간의 이해, 시민적 자부심이나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에 돌아갔다.

- Historica-Dominion Institute

Historica-Dominion은 2009년 9월에 창립된 국가 자선 기관으로서, 기존에 있던 ‘Historica Foundation of Canada’와 ‘Dominion Institute’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Historica-Dominion 협회는 ‘The Canadian citizenship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국내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시민권 학습에 대한 안내서인 ‘캐나다 발견하기: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Discover Canada: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을 읽고 모의 시민권 시험을 보도록 하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과 학급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협회에서는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캐나다 국립 공원들 및 역사 부지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My Parks Pass’, 제 2차 세계 대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The Memory Project’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Engage-Toi !(Get involved)

‘Engage-Toi !’는 2011년 8월 1일에 시작되어 2014년 7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인 프로젝트이다. 퀘벡 주 몬트리올의 ‘Fondation de la tolérance’ (Foundation of tolerance)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퀘벡주의 75개 학교로부터 온 30,000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편견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워크샵들에 참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관용(intolérance)에 대한 이해를 높게 된다. 또한, 지방, 다인종 도시, 토착민, 그리고 영어권으로부터 온

120명의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리더십 및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학교들은 워크숍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되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관용의 대사(ambassadors of tolerance)로서 일하게 된다.

- 오타와 중국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오타와 중국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비영리, 자선 기관으로서, 오타와에 새로 온 이민자들과 중국계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 온 이민자들의 구직을 돕고 이들의 직업 훈련을 도와주는 데 있다. 그리고 워크숍과 파트너십, 무보수 인턴십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 온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실용적인 배움의 경험과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기술 및 직업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공 교육과 지원 활동

커뮤니티 단체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서로간의 협력하에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자료들을 만들고 전파시키는 한편,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하고 상호 문화적 이해를 강화시키는 이벤트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인 ‘Paul Yuzyk Award for Multiculturalism’은 캐나다 전역에서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신장 및 인식을 높이는 데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캐나다의 상원 의원이었던 Paul Yuzyk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유산과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정립한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서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Paul Yuzyk의 다음과 같은 말은 캐나다에 다문화주의를 향한 그의 염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동부유럽 출신의 미숙한 이민 노동자 또는 외국인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애국심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는 만약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불렀다면, 이것은 캐나다에 어떤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Paul Yuzyk은 그의 삶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중요성과 ‘다양성 가운데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을 캐나다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근본을 이루는 하나의 컨셉으로 강조하였다. 2010년도에 이 상은 인종 관계의 개선 및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이해를 신장시키는데 공헌한 Paul Nguyen에게 돌아갔다.

- Racism. Stop It ! National Video Competition

‘Racism. Stop It !’은 비디오 대회로서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 근절에 대한 생각을 담은 짧은 비디오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승자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캐나다 전역으로부터 293개의 비디오가 모여졌으며, 이것은 다양성 가운데의 통합을 주제로 한 비디오들이었다. 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비디오들은 2주간 유튜브(YouTube)에 올려져서 투표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Public Choice Award winner를 선발하게 된다.

- Black History Month

Black History Month는 흑인계 캐나다인들의 역사를 회상하고 그들의 캐나다 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매년 2월에 개최되고 있다.

- Asian Heritage Month

매년 5월에 열리는 Asian Heritage Month는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의 역사를 기리고 이들의 캐나다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만들어졌다. 2010년 4월 29일 Kenney 장관은 다양한 문화 단체들과 커뮤니티 그룹들을 국회에 맞아들였으며,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2. 연방 및 공공 기관들에 대한 지원

시민권과 이민 부서는 연방 및 공공 기관들이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 따른 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움과 자원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권과 이민 부서는 Multiculturalism Champions Network(MCN)의 사무처로 있으며, MCN의 주요한 업무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을 돕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이 법의 책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캐나다 국민들의 다문화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주정부 및 연방 직할지의 다문화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문제들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연방-주-영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방 정부 및 주정부 대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연구들에 대한 정책 담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Metropolis Project라는 연구 기관을 통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 및 통합, 인종 문화 집단들의 복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캐나다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Metropolis Centres of Excellenc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통합의 증진: 보완적 계획들

시민권과 이민 부서는 캐나다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돕기 위한 보완적 정책들과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은 2010년에서 2011년의 기간 동안 개인들과 단체들의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이 부서가 지원한 몇 가지 프로젝트 들이다.

- 외국 자격증

외국 자격증 위탁 사무소(Foreign Credentials Referral Office)는 국제적으로 교육 받은 개인들이 캐나다에서 보다 빨리 고용되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이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을 인정받는 데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들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보다 빨리 통합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캐나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목적이다.

- 지역 이민 파트너십

지역 이민 파트너십은 새로 온 이민자들의 정착과 통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협력 기관으로서, 학교 기관들, 건강 기관들, 인종 문화 단체들 및 사회 복지 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지역적 전략 계획 과정들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도록 하고, 이민자들 및 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직한다.

- 정착 프로그램 기금 프로젝트

정착 프로그램 기금 프로젝트는 새로 온 이민자들이 캐나다인들 및 그들의 지역 커뮤니티들과 연계를 맺도록 하고, 통합된 사회 건설을 위해 커뮤니티들이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권과 이민 부서에서는 2010년에서 2011년의 기간 동안 44개의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가 Hospital for Sick Children(SickKid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새로 정착하는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SickKids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관계자들의 문화 능력 교육을 신장하고 환자 교육 자료들 및 다른 문서들을 아홉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벤쿠버와 토론토 공항에 새로 도착하는 이민자들 및 난민들이 20 개가 넘는 언어로 오리엔테이션 및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 3 절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켜, 다문화주의가 정책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제화 단계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국가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입법 제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단지 국가 이상에 대한 언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법률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영향은 일차적으로, 앞서 언급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자체로부터 비롯된다. 즉,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제도 하에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사회의 근본 토대를 이루는 특징으로 인정받았으며,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법은 연방 정부의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인데, 이것은 연방의 사법 재판에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은 인종과 국가, 민족적 근원과 피부색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탱하는 법적 영향력을 갖는 또 다른 근원이 되는 법은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다. 이 헌장은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헌장은 캐나다 정부로부터의 차별에 대항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것과 종교적 자유와 집회에 있어서의 자유와 같은 주요한 몇 가지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캐나다인들의 다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증진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 헌장을 해석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통과되는 법률이라도 모두 이 헌장에서 언급한 권리와 자유와 합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래,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여러 정책들과 법률들을 통해 발달해 왔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개의 중요한 법들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 Act)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1988년 7월에 채택되었고, 이것은 인종적 문화적 평등의 원칙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에 대응하여 소수민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단체들과 부서들은 다문화의 캐나다 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데에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캐나다 정부가 연간 보고서를 통해 다문화주의 규정들을 따르고 있음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2.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은 캐나다 헌법의 일부로서, 캐나다의 법적,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이것은 캐나다에 있어서 상위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모든 다른 법들은 이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와 의무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는 본 헌장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다른 일반법들은 필요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나, 이 헌장은 연방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개정이 가능하며, 비록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헌장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⁶²⁾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은 다양한 헌법적 권리와 자유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헌장의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권에 있어서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 및 신념, 표현에 대한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자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3조에서 5조에 걸쳐서는 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주적 참여의 권리 및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다. 또한, 제 6조는 이동의 권리에 대해 제시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 및 어떤 주로도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장은 평등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 헌장의 제 15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본 헌장은 이들을 방해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헌장을 통해 공식 언어에 대한 권리 및 소수 언어 교육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 언어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본 헌장의 제 16조 및 22조를 통해 영어와 불어가 캐나다의 공식 언어임을 명시하였고, 모든 연방 기관들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이 두 언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헌장의

62) Makarenko, J.(2007).

제 23조를 통해서는 소수 언어 교육권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 조항은 연방 정부들이 캐나다인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공식 언어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어권 지역에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소수의 화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어로 교육시킬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부모가 해당 소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그들의 교육을 주로 이 언어로 받았을 경우에 주어지며, 부모들이 이러한 소수 언어 교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소수 언어 학교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또한, 퀘백의 경우, 소수 언어 교육 법은 주정부의 법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은 연방 및 주 정부들에 적용되며, 모든 정부 기관의 법률들은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에 일치해야 함을 명시하였다.⁶³⁾

3. 캐나다 인권 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인권법은 1977년 캐나다 연방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인종이나 국가, 민족 출신,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가족 환경,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지켜 나가는 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 법은 특히 고용주들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차별적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이란 용어는 “사람들을 정

63) Makarenko, J.(2007).

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부정적으로, 혹은 불리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이러한 맥락에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고 용: 한 개인은 인종 혹은 신체적 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징에 바탕하며,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응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근거로 고용을 거부당할 수 없다.
- 평등한 급여: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의 일에 대해 똑같이 지불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용주는 남성 직원보다 더 적게 여성 직원에게 지불할 수 없다.
- 제화나 서비스의 공급: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제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지 개인적 특징들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부채를 빌리려고 할 때, 한 결혼한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은 또한, 증오가 담긴 메시지에 관한 의사소통을 금하고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차별을 부추기거나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 메시지를 가리킨다. 2001년도에 개정된 법은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법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제 15조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법이 정해 놓은 고용을 위한 최대 연령에 이른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이나 연금 가입에 있어서 존재하는 차별은 인권법이 지정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64)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2004).

캐나다 인권법이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장과 다른 점은, 후자는 연방, 주정부, 시 차원의 캐나다의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반면, 인권법의 경우는 단지 연방 정부 및 연방의 사법권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연방의 모든 입법 및 각 부서들, 기관들에 적용됨과 동시에 연방에서 관리하는 비즈니스나 산업 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⁶⁵⁾

4.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Canadian Heritage Languages⁶⁶⁾ Institute Act)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서 추구하는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따라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의 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제 4조에서는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유산 언어의 습득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고, 유산 언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발달시킴으로써 이러한 언어들의 사용을 권장하며, 관련 교재들을 만들고 전파시키며, 연구를 진행하고, 대학이나 기관들 간의 학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나 교육 기관들, 유산언어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 간의 협의를 장려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91년 1월 국회에 의해 채택된 이 법은, 교사 양성 교육과 캐나다의 민족 소수 언어 교실의 커리큘럼 내용을 위한 국가적 기준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에드몬톤에 유산 언어(heritage language)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65) Makarenko, J.(2008).

66) 유산 언어(heritage language)란, 개인이 속한 지역의 주도적 언어(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개인이 가정에서 습득한 언어를 말한다. 이 언어는 특히 개인이 속한 지역의 주도적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습득하게 되는 언어로서, 언어적 전환(switch)으로 인해 불완전하게 습득되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5.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 법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Act)

1991년 1월에 국회에 의해 채택된 이 법은 공공 교육을 통해 인종 차별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토론토에 인종 관계 재단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인종 관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활동들을 지지하며, 이에 관한 연구 및 효율적 정책들의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법들은 이것의 실행에 있어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에 관한 상임 위원회가 해체되기 전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의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관한 연구’(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in Federal Institu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 기관들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있어서 연방정부 기관들의 진척 상황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것은 정부 부서 및 부처들이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원칙들을 지켜나갈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제 4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큰 영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와 같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주의 법과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들의 교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캐나다의 각 주들은 이들이 당면한 현안과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주정부 차원의 정책 및 교육

에 적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도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이 교육 분야에 실제로 어떻게 관련되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의 제 2언어 교사 협회에서 제시한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지침서 및 학교 위원회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발달시키고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1993년과 2009년에 온타리오 주의 교육부에 의해 발간된 ‘학교 위원회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과 ‘온타리오 학교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이라는 제목의 다문화 교육 관련 지침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연합회의 다문화주의 교육 지침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연합회는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지침을 발간했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주의 정책 및 역사, 다문화주의 실행 전략의 예, 실천 방안, 교육적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 언어 정책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1971), 권리와 자유 헌장(1982), 그리고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1988)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언어 정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두 개의 공식 언어 사용과 소수 언어들의 보호, 특히 토착민들의 언어에 대한 권리, 두 공식 언어들 간의 동등한 지위 유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해 공식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배워야 할 필요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교와 캐나다 사회의 변화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캐나다 사회는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사회의 일원적인 컨셉을 재생산하기 보다는 변화에 있어서 도구적 역할을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도전 과제는 다문화주의 및 평등성에 대한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종 문화 그룹들의 생활 방식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는 교육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교 및 커뮤니티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학교 및 커뮤니티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은 이들이 변화의 성공적 주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준
 - 유사함과 차이점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 캐나다의 사회 현실인 다원주의와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인적인(holistic) 학교 환경을 창조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 커뮤니티 발달, 사회 변화 프로젝트, 비판적 정치 행동주의, 전 지구적 계획 등의 형태로 그들의 커뮤니티들과 의미 있고 생산적인 상호 작용을 하도록 한다.
- 커뮤니티 수준
 - 학교 직원 채용에 있어서 다양함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행한다.
 - 교육 정책들과 실행들이 모든 그룹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이사회, 그리고 커뮤니티 간에 열린 대화를 증진시킨다.
- 고등 교육 수준
 - 교사 연수 기관들과 협력하여, 재직 전 교육 및 현직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와 커뮤니티에서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민감성과 지식,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연수 기관들 및 민족 문화 커뮤니티들과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여러 민족 문화와 관련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교사 교육 및 교육을 위해 모집된 사람들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침서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교육적 실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학생들은 학교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지침서는 또한 학교와 커뮤니티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학교가 주변의 커뮤니티들과 접촉함으로써 이 둘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 밖에도 학교는 학생들이 다문화주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반 인종주의 교육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인종, 성, 신념, 언어, 문화, 장애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친구들 및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책임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에서 발간한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What are Human Rights ? Let’s Talk...,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공평성과 평등성에 대한 권리 등을 가르치기 위한 가이드로서 교사들에게 인권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정부의 커리큘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권 교육에 관한 교육적 계획은 주정부의 현안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본 안내서에서는 교육적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UNICEF’와 같은 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참고 서적들도 제시하고 있어 교사들이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교육적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온타리오 주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 평등 교육

1992년 온타리오 주의 교육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⁶⁷⁾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그들의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또한 학교 및 사회에서 인종 차별주의를 근절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학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정책들과 관행들 가운데에는 인종 차별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 정책은 캐나다의 다른 여러 주들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주의 인구 구성이 인종적, 문화적으로 점점 다양해지는데 반해 학교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유럽 중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토착민들과 인종적 소수민들의 경험과 가치 및 관점들을 배울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67)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은 모든 인종, 문화 그룹 일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평등성에 저해되는 제도적, 개인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인종’이란 사회적 범주로서, 사회가 피부색, 눈의 모양, 머리카락의 조직, 얼굴 모습 등과 같은 특징들에 따라 사람들을 나눈 것이다. ‘민족 문화적’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한 사람의 문화적 유산을 지칭하며, 이것은 국가적 소속, 언어 및 종교적 배경을 포함할 수 있다. 같은 인종 그룹 내부에도 여러 민족 문화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 in School Boards: Guidelin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1993).

낮은 직업적 기대감, 그리고 높은 중퇴율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학교 위원회들의 기존의 관행들을 점검하고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평등한 교육에 방해되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고용에 있어서 모든 인종과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온타리오의 교육부는 1993년 7월 13일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학교 위원회 정책들의 발달 및 실행’⁶⁸⁾을 주제로 일종의 정책/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발행하였고, 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원칙들에 따라 교육부는 1993년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행하여, 학교 위원회들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계획을 만드는 단계들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단계들을 제시하였다.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정책 및 실행 계획을 발달시키기 위한 절차들의 예

1. 학교 위원회는 정책들의 개발 및 진행에 착수한다.
2.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3. 이사들과 고위 위원들, 협회, 연맹 및 커뮤니티 그룹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고문 위원회를 설립한다.
4. 거론될 필요가 있는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을 파악한다.
5. 중요한 목표들을 점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운다.
6. 예상되는 결과들을 확정한다.
7. 목표들과 결과들이 성취될 수 있는 일정표를 만든다.

68) <부록> 참조

8. 실행을 위한 책임을 할당한다.
9. 자원들을 분배한다.
10. 의사소통 계획 및 점검 과정을 수립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들은 하나의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학교 위원회에 맞는 절차들로 절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 및 실행 계획들이 포괄해야 할 주요한 영역들로서 1) 위원회의 정책, 가이드라인 및 실행, 2) 리더쉽, 3) 학교-커뮤니티 파트너십, 4) 교육 과정, 5) 학생 언어, 6) 학생 평가, 측정 및 배치, 7) 안내와 자문, 8) 인종적, 민족 문화적 괴롭힘, 9) 고용 관행들, 10) 직원 개발의 10개의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주요 강령이나 원칙들, 목표들의 목록, 행동 계획, 결과들의 목록, 자원들의 목록, 일정표, 행동 계획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서에서 제시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정책, 가이드라인 및 실행

위원회의 정책, 가이드라인 및 실행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가 언급되어야 하며, 특히 과거에 소외되었던 학생 그룹들의 관점과 요구 및 희망 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2) 리더쉽

학교 직원들로 하여금 학교 내의 조직적인 불평등과 장벽들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 위원회 이사들과 교육감, 교장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학부모, 민족 문화 단체들 및 대학들 모두가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책임

이 있다. 교육은 다양한 문화들의 기여를 반영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주의는 근절되어야 한다.

(3) 학교-커뮤니티 파트너십

학교 위원회들이 학부모 및 커뮤니티 그룹들과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 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 문화 그룹들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그룹들과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육 과정

기존의 교육 과정은 유럽의 백인들의 관점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 인종주의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들의 관점을 반영하며, 다원화된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5) 학생들의 언어

학생들의 언어에 있어서는 우선, 학교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영어나 불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교사들이 이들의 모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제 1언어 능력이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에 토대가 되고, 정서 발달과 문화적 유산의 연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 학생 평가, 측정 및 배치

반 인종주의적 학생 평가 및 측정은, 표준화된 테스트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선행 학습, 이전의 학교 경험, 문

화적, 언어적 배경,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제한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정확한 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

(7) 안내와 자문

상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차별의 장벽을 제거하도록 하고, 토착민들이나 인종적 소수민에 속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성취하고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상담은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인종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8) 인종 및 민족 문화적 괴롭힘

인종 및 민족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온타리오 인 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차별 행위이다. 이것은 희생자의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 간에, 교육 관계자들 간에, 행정가들이나 이사들 간에 발생할 수 있다.

(9) 고용 관행들

평등한 고용 관행은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있어서 필수이다. 학교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고용과 승진, 교육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0) 직원 개발

학교 관계 직원들이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 또한, 불평등 및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학교 위원회 이사들과 직원들이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평등성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3년 출판된 온타리오 주의 ‘학교 위원회에서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 in School Boards)은 각 학교 위원회가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정책을 발달시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9년 온타리오 주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지침서를 내놓게 되는데, 이것은 ‘온타리오 학교들에서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in Ontario Schools)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로서, 1993년에 제안된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정책을 보다 확장하여 만든 것이다. 다음을 통해서는 2009년에 발행된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의 발달 및 실행에 관한 지침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온타리오 학교에서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

2009년 교육부는 ‘다양성에 대한 약속의 실현: 온타리오의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 전략’(Realizing the Promise of Diversity: Ontario’s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 and Policy/Program Memorandum(PPM) No. 119)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온타리오 학교 위원회들이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안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일원들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 받으며,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받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벽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벽들은 성, 인종, 민족 출신지,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적, 정신적 능력, 성 정체성 등과 관련한 차별을 말한다.

이 제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학교에서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in Ontario Schools)이라는 일종의 지침서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학교 위원회들이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을 발달시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는,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 정책에 관한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앞서 제시한 1993년 7월 13일 발행된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학교 위원회 정책들의 개발 및 실행’으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인종이나 성 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요인들 가운데 둘 이상의 요인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평등과 포용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본 지침서가 1993년에 발행된 제안서의 영역을 넓혀 보다 넓은 범위의 평등성과 관련된 요인들과 온타리오 인권 규약(Ontario Human Rights Code)에서 제시한 금지된 차별 근거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본 지침서는 학교 위원회들이 여기서 제시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전략이 ‘온타리오 인권 규정’ 및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에서 제시한 기본적 인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평등성 및 포용적 교육 전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공유되고 헌신적인 리더십

교육부 장관과 학교 위원회 및 학교가 공유하며 이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편견과 차별의 장벽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제거함

으로써 차별을 근절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등성을 성취하는 것은 공유된 책임이며,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2)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 및 실행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들이 배우는 것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지지 받으며, 그들이 배우는 환경 속에서 환영받는 긍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교사들과 학생들 및 학교 직원들은 모두를 존중하고 지원하며 환영하는 환경 속에서 배우고 일한다.

(3) 설명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있어서, 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설명 책임 및 투명성은 성공을 위한 이미 검증된 명확한 조치들의 사용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등성을 성취해 내는 발달 과정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입증될 것이다. 설명 책임은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학교 위원회는 다음의 여덟가지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1) 위원회의 정책, 프로그램, 지침, 그리고 실행

학교 위원회는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의 원칙들을 다른 정책들 및 프로그램들, 실행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의 개인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장벽을 제거하며,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반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하여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유되고 헌신적인 리더십

학교 위원회 및 학교들은 차별적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은 협력적 환경을 만들어서 관계자들이 평등성과 포용적 교육 원칙 및 실행에 대한 헌신의 약속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과 조력은 학생과 학부모, 연방, 대학 및 다른 커뮤니티 파트너들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한다.

3) 학교-커뮤니티 관계

위원회들은 그들의 지원 활동을 확장하여,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 커뮤니티 회원들 및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들은 파트너들의 전문 지식을 끌어내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포용적 교육 과정과 평가 관행들

학교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역사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과 학교 프로그램들, 교육 관계자들 및 행정 직원들 가운데 자신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들은 교육과 평가 관행들을 검토하여 편견이나 차별의 장벽들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을 돕고, 학생들의 성취 간의 차이를 줄이는 전략들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는 그 기준이 일관되어야 하며, 평가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별적 편견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논의해야 한다.

5) 종교적 조정

종교적 조정에 관한 학교 위원회의 정책들은 온타리오 인권 규정

및 관련 정책 제안서들과 일치해야 하며, 학생들 및 직원들을 위한 종교적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6) 학교 환경과 차별 및 괴롭힘 방지

평등과 포용적 교육에 관한 위원회의 정책들은 차별과 괴롭히는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운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교 분위기란 학교 커뮤니티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환영 받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이다. 정기적으로 학교 및 학교 위원회가 학교 분위기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 분위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점검은 부적절한 행동과 차별의 장벽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위원회들은 학교 분위기에 대한 설문 조사에 평등과 포용적 교육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야 한다.

7) 전문적 학습

학교 위원회들은 교사, 상담가, 행정가 및 학교 이사들이 반 인종주의, 반 차별주의 및 성에 기반한 폭력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평등과 포용적 교육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들은 또한 그들이 속한 기관이나 다른 학교 위원회 및 커뮤니티 파트너들 내에 존재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도록 권고된다.

8) 설명 책임 및 투명성

지속적이고 열린 대화를 통해 학교 위원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목표들과 그 진행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위원회들은 평등과 포용 교육에 관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학교 위원회 및 학교 향상에 관한 계획들은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계획들은 학습 성취의 격차를 줄이고 존중하며,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연간 보고서 작성자는 교육부에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 실현에 있어서 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시된 목표들의 실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각의 학교 위원회가 평등과 포용적 교육 정책에 있어서 다른 발달 단계에 있음을 인정하므로 전략은 4년에 걸쳐서 시행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에 제시될 사항은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다문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업안들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수업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활동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수업안은 다양한 문화들에 존재하는 전통 휴일이나 축제에 대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4> 다문화 학습 계획안 I

학년: 8학년

과목: 역사 - 캐나다: 변화하는 사회

<p>■ 교육부의 취지</p> <p>8학년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19세기 캐나다 이민 정책의 특징들을 알 수 있다 (예. 인두세, 조업 중단 규정의 부재)</p>
<p>■ 다문화 메시지</p> <p>학생들은 던더 베이(Thunder Bay)에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존재에 대해 배운다. 이 활동은 많은 중국계 캐나다 가정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p>
<p>■ 활동</p> <p>- 학생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역사 연혁</p>

<p>을 검토한다 . http://www.ccnc.ca/toronto/history/timeline.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의 변화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노트한다. - 학생들은 캐나다의 초창기 이민 정책들에 관해 그들의 느낌을 표현한 글을 쓴다.
<p>■ 평가</p> <p>학습 활동에 대한 반응을 적은 글은 첨부된 규정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p>

<표 5> 다문화 학습 계획안 II

사회 과학 - 전통과 축제

<p>■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여러 종교들과 관련된 달력 정보들을 익힌다. -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의 전통이나 축제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져와서 발표하도록 한다(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이 활동에 대한 개요를 서술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학생들이 적합한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p>■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주며 이야기 한다(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도 질문들’을 사용한다).
<p>■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정의 전통과 축제들 간의 차이점들을 지적 한다(차이점들이 있다면). - 도입 단계의 활동에서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많은 축제들과 전통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과, 심지어 학생들의 이웃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p>■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 동안 휴일들과 축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p>■ 그룹 활동</p> <p>- 소그룹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특정한 휴일이나 축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배운 것을 학급 학생들과 공유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정보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고, 모든 그룹 구성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사용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p>
<p>■ 개인 활동</p> <p>- 반으로 나누어진 큰 종이 위에, 학생들은 학급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발표하기 위해 선택한 축제의 그림 및 그들이 배운 축제들 가운데 하나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p>

지금까지 살펴본 온타리오 주에서 발행한 1993년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침서 ‘학교 위원회에서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및 2009년의 지침서 ‘온타리오 학교에서의 평등과 포용적 교육’은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이 교육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침서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 정책들을 학교 위원회들이 발달시키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한 것은 다문화주의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다문화주의 교육 정책의 방향이 주로 반 인종주의, 편견의 제거, 평등의 실현 및 포용적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캐나다의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다음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법

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5 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들

연방 정부가 채택한 다문화주의 법은 캐나다 여러 주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 기관들은 다문화주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나 도전 과제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음을 통해서는 이 법의 실행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가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많은 정부 기관들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부족한 자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부족한 예산 문제를 비롯하여 직원 수의 부족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많은 기관들은 인력 자원의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어떤 직책에 대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캐나다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고용 과정의 단순화 및 종교나 국가, 민족적 출신지, 인종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후보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들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이나 정의 등에 대한 그들의 지식 부족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에 저해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많은 지원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몇몇 주요 기관들이 대중들에게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문화주의 관련 활

동들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먼 거리일 경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민족 커뮤니티의 숫자가 많지 않은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 법을 캐나다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캐나다인들에게도 하나의 도전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록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게 될지라도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 6 장 맺는 말

지금까지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권 교육, 반 인종주의 교육, 언어 교육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는 다문화주의 정책들 및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국가 정책이 되기까지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과 차별, 캐나다 정부의 동화주의 정책과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 단계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도 존재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분리된 학교 법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을 배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 주고,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다문화주의로의 발달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시사하는 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관련법들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이나 법률적 기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다문화 교육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운영되기 어렵다. 온타리오 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를 표방하여 주정부 산하 교육부에서 학교 위원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침서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의 교육적 구현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다문화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관계자들 및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과 불

평등한 사회 구조들에 대해 보다 민감해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구체적 실행들이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와 정부,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책임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문화주의 관련 정책 및 법률이 다문화 교육 과정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우리가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dachi, K.(1976). *The enemy that never was: The history of Japanese Canadians*.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 Axelrod, P.(1997). *The Promise of Schooling: Education in Canada, 1800-1914*.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issoondath, N.(1994). *Selling Illusions: The Cult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Toronto: Penguin Canada.
- Chan, A. S.(2007). Race-Based Policies in Canada: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In R. Joshee & L. Johnson(Ed).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Vancouver. Toronto: UBC Press.
- Derwing, M.(2009). *Canadian Multiculturalism*. Library of Parliament.
- _____, T. M. & Munro, M. J.(2007). Canadian Policies on Immigrant Language Education, In R. Joshee & L. Johnson(Ed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UBC Press. pp. 93-106.
- _____, M., & Leman, M.(2006). *Canadian multiculturalism*. Library of Parliament, Canada. Retrieved February 1, 2011 from: <http://www2.parl.gc.ca/content/lop/researchpublications/936-e.htm>
-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1991). *Immigrant language training policy framework*. Ottawa: Immigration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 Fleas, A., & Elliot, J. L.(1992). *The Challenge of Diversity: Multiculturalism in Canada*. Scarborough, ON: Nelson.

참 고 문 헌

- Frideres, J.(2008).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In J. Biles, M. Burstein, J. Frideres(Eds).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Canada*.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Galabuzi, G. E.(2008). Social exculsion. In D. Raphael(E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anadian perspectives*.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Inc. pp. 235-251.
- Granatstein, J. L.(1998). *Who killed Canadian History?*, Harper Collins.
- Hyman, I., Mercado, R., Galabuzi, G. E., & Patychuk, D.(in press).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indicators of social and economic exclusion and inclusion in Canada*. Draft Report to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October.
- James, C. E.(2001). Multiculturalism, Diversity and Education in the Canadian Context: The Search for an Inclusive Pedagogy, In C. A. Grant and J. L. Lei(Eds.), *Global Construc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ies and Realit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_____, C. E.(2005).(Eds). *Possibilities & Limitations: Multicultural Policies and Programs in Canada*. Halifax: Fernwood Publishing.
- _____, C. E., & Wood, M.(2005). Multicultural Education in Canada: Opportunities,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 C. E. James (Ed). *Possibilities & Limitations: Multicultural Policies and Programs in Canada*. Halifax: Fernwood Publishing, pp. 93-107.
- Johnson, L.(2007). Diversity Policies in American Schools: A Legacy of Progressive School Leadership and Community Activism. In Joshee, R., & Johnson, L.(Ed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Vancouver. Toronto: UBC Press.

- Joshee, R., & Johnson, L.(Eds).(2007).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Vancouver. Toronto: UBC Press.
- _____. & Winton, S.(2007). Past Crossings: US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Canadia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R. Joshee & L. Johnson(Ed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Vancouver. Toronto: UBC Press. pp. 17-27.
- Kymlicky, W.(1998). *Finding our way: Rethinking ethnocultural relations in Canada*.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Canada.
- _____, W.(2010).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and research themes on Canadian multiculturalism 2008-2010*. Paper prepared for CIC.
- Makarenko, J.(2007).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n Introduction to Charter Rights*. Published on Mapleleafweb.com.
- _____, J.(2008).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Introduction to Canada's Federal Human Rights Legislation*. Published on Mapleleafweb.com.
- McLeod, K. A., & Krugly-Smolka, E.(Eds)(1997). *Multicultural Education: A Place to Start: Guideline for Classrooms, Schools and Communities Diversity in Canada*. Canadian Association of Second Language Teachers.
- Ontario.(1993). *An Act to Provide for Employment Equity for Aboriginal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Members of Racial Minorities and Women*. Statutes of Ontario, Chapter 35: 611-40, December 14.

참 고 문 헌

- Pon, G.(2000). "Importing the Asian Model Minority Discourse into Canada: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and Education." *Canadian Social Work Review* 17(2): 277-91.
- Rosaldo, C.(1996).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Retrieved February 1, 2011 from: <http://www.ccsd.ca/subsites/inclusion/bp/as.htm>
- Walker J. W.(1997). "Race", *rights, and the law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 Waterloo, ON: Osgoode Society for Canadian Legal History and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Winks, R.(1972). *The Blacks in Canad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참고 웹 사이트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2010-2011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multi-report2011/part4.asp>

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 in School Boards

Guidelin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1993

<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antiraci/antire.pdf>

Black History Canada

<http://blackhistorycanada.ca/education.php>

Mapleleafweb(Multicultural Policy in Canada)

<http://www.mapleleafweb.com/features/multiculturalism-policy-canada#structure>

Canadian Muticulturalism 2008-2010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multi-state/index.asp>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http://laws-lois.justice.gc.ca/eng/charter/page-1.html>

Canadian Human Rights Act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index.html>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http://www.crr.ca/>

Employment Equity Act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E-5.401/index.html>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in Ontario Schools: Guideline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http://www.edu.gov.on.ca/eng/policyfunding/inclusiveguide.pdf>

Mapleleafweb.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Introduction to Canada's Federal Human Rights Legislation

<http://www.mapleleafweb.com/features/canadian-human-rights-act-introduction-canada-s-federal-human-rights-legislation>

Mapleleafweb.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n Introduction to Charter Rights

<http://www.mapleleafweb.com/print/303>

Multicultural Education: A place to start

Guidelines for Classrooms, Schools and Communities Diversity in Canada

<http://www.caslt.org/Print/rep5ep.htm>

참 고 문 헌

Policy/Program Memorandum No. 119

<http://www.edu.gov.on.ca/extra/eng/ppm/119.html>

Site for Language Management in Canada

http://www.slmc.uottawa.ca/?q=leg_heritage_languages_act_sum

부 록

부 록

다음은 온타리오 교육부가 학교 위원회들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정책 및 실행을 돕기 위해 발행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이다.

정책/프로그램 제안서 No. 119

발행일: 1993년 7월 13일

유효일: 폐지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주 제: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학교 위원회 정책
들의 발달 및 실행

적 용: Chairpersons 학교 위원회 및 소수 언어 담당부, 교육 책임자들

서 론

온타리오 정부는 모든 영어 및 불어권 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평등한 교육적 성과를 보장해 주기 위해 헌신한다. 본 정부는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교육적 구조와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주로 그 관점에 있어서 유럽적인 것이었으며, 토착민들과 다양한 인종 및 민족 문화 소수민들의 관점과 경험, 요구들을 고려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 토착민들을 비롯하여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민에 해당하는 학생들 및 학교 관계자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회들을 제한하는 조직적 불평등이 학교 시스템에 존재 했었다. 따라서, 교육가들은 인종 차별주의적인 제도적 정책들과 절차들 및 이와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과 관행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 인종차별

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교육은 다양한 그룹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문화 교육을 넘어선다.

배 경

1987년 한 지방 자문 위원회는 학교 위원회들을 위해 인종 관계들에 대한 정책 모델의 초안으로 작성된 ‘인종과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정책 발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전 지방에 걸쳐 사용되었다.

1993년 겨울과 봄, 교육부는 학교 위원회들과 일련의 원탁회의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반 인종차별주의와 민족 문화적 평등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활동과 관점 및 필요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이 모임에서 얻은 정보는 현행 정책 방향과 요구 사항들을 발달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입법적 요구 사항

1992년 교육법의 개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모든 학교 위원회는 반 인종주의와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정책 및 이 정책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달시켰다. 다음으로, 학교 위원회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그들의 정책들과 계획들을 제출했으며, 교육부에 의해 지시된 변화들을 실행하였다. 정책들에 대한 위원회의 실행은 정책들에 대한 수행과 그 수행의 여러 측면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며, 몇 가지 요구되는 변화들은 즉각 일어나는 반면 다른 변화들은 시간이 걸리는 변화들 이었다. 이에 ‘학교 위원회에서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 정책 발달 및 실행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정책 및 실행 계획들의 전개에 있어서 학교 위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학교 위원회 정책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 가운데 몇 가지는 위원회들에 속한 분과들의 전담 관

할 하에 있으며, 불어 학교 위원회들과 불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제 23조와 교육법 12조 및 13조를 존중하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정책들의 개발, 승인, 그리고 실행을 위한 추진 일정

교육부는 학교 위원회들이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 그리고 관련 활동들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단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미 관련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 위원회들은 자신의 정책들이 본 제안서 및 요구 사항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들은 1993년 10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개정된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개발하고 있는 학교 위원회들은 이들을 완성하는 대로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이들을 제출한다.

위원회들은 늦어도 1995년 3월 31일까지는 교육부에 그들의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들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자마자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에 관한 그들의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 정책들의 실행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위한 요구 사항들

학교 위원회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은 포용적이어야 할 것이며,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성이 교육 프로그램들과 위원회의 수행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통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정책들과 계획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계획 및 전달에 있어서, 위원회의 행정부 및 관계자들이 토착민들과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불평등과 장벽들을 파악하고 이를 알리는데 전념할 것 이라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부 록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은 다음의 10가지 주요 영역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 위원회의 정책들, 지침들, 그리고 실행들 - 리더쉽
- 학교와 커뮤니티 간의 파트너쉽
- 교육 과정
- 학생들의 언어
- 학생들의 평가, 측정 및 배치
- 안내와 조언
- 인종적, 민족 문화적 괴롭힘
- 고용 관행
- 직원 개발

실행 계획들은:

- 5개년 계획이다.
- 위원회 정책들과 실행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의 계획 및 전달에 있어서 인종, 민족 문화와 관련된 편협한 시각들과 장벽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포함한다.
- 토착민 그룹들과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그룹들, 그리고 다른 교육 파트너들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들과의 파트너쉽 활동들을 포함한다.
- 모든 학교 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그 진전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정책 발달 및 실행 과정은 위원회의 언어로 이루어질 것이다. 위원회들과 부서들은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제발하는 데 개입된 위원회 회원들이 위원회의 언어를 말하지 못할 경우 대안의 의사소통 전략을 찾도록 한다.

실행의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의 중점은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하고 고정 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넓히는 데에 있다.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현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종 차별주의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실행 계획의 승인

위원회의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은 지정된 추진 일정 내에서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지역 사무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이 부서는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들이 승인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한다. 부서의 위원회들이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위원회에서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이라는 문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실행에 대한 점검

정책 실행에 대한 점검에는 커뮤니티와 학생들이 개입될 것이다. 학교 위원회들은 연간 진행 보고서를 교육과 연수 담당 부서의 적절한 지역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이 부서는 정책 실행에 관한 주기적 감사를 수행할 것이다.

이 부서는 위원회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정책에 관한 실행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학교 위원회에서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이라는 문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고용 평등성

평등한 고용 관행은 위원회의 반 인종주의 및 민족 문화적 평등 정책과 실행들에 있어 통합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고용 관행에 있어 학교 위원회는 온타리오의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경험들을 반영해야 하며, 이것을 이해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된 고용 평등 법(79조)은 학교 위원회들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들에게 고용 평등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점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 위원회들은 제안된 고용 평등법이 법안이 되기 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거나, 지정된 그룹이나 하위 집단을 정의하거나, 지정된 그룹들의 목표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그 동안, 위원회들은 미래에 있어서의 고용 평등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해, 고용에 있어서 조직적 장벽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평등성의 원칙들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는 제안된 고용 평등법이 법안이 된 이후에 이용 가능하다.

교육부의 원조

‘변화하는 전망들’(Changing Perspectives)이라는 자료 문서는 ‘학교 위원회의 반 인종주의와 민족 문화적 평등성.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변화하는 전망들에 대한 프랑스 어의 적용’(Antiracism and Ethnocultural Equity in School Boards. Vers une nouvelle optique, the French-language adaptation of Changing Perspectives)이라는 문서와 함께 1993년 가을에 발간될 것이다. 교육부는 위원회들이 그들의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향후 추가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다 교육부의 지역 사무소 직원들은 학교 위원회의 정책 및 실행 계획들의 개발과 이 정책들의 실행을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모든 학교 위원회의 관계자들과 공유해 주길 바란다.